

企業의 寄附行爲와 租稅政策方向

1997. 12.

金 珍 洙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租稅만으로는 國民福祉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財政收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政府의 財政支出만으로 社會福祉, 教育, 宗教, 公衆衛生, 文化事業 등 다양한 부문의 需要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에 기증되는 기업의 寄附金과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복지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民間部門에 기증되는 기업의 寄附金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에 이를 전액 혹은 일부 損金算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寄附金の 損金算入限度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寄附金を 지출하는 것은 기업의 純利益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株主의 權利를 침해하는 것이며, 資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업의 기부행위가 경영자의 效用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진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기업의 寄附行爲가 경영자의 效用극대화가 아닌 기업의 利潤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을 一般經費로 인정하여 損金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기부금에 관한 租稅政策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實證分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寄附金支出 現況을 파악해 보고 法人所得 階層別, 資本金 區間別,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主要外國의 租稅制度和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珍洙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本 報告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本院의 金栽鎭 박사와 익명의 논평자들, 財政經濟院 稅制室 法人稅制課의 장태평 과장, 최영록 서기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 및 분석에 수고한 金正絃, 金建洙, 沈在珍 주임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張貞順 연구조원, 그리고 校訂을 맡아 준 출판과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仲秀

目 次

I. 序 論	9
II.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金支出 現況	12
1. 寄附金支出 分析의 概要	12
2. 寄附金支出 推移	14
3. 産業別 寄附金支出 現況	18
III.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金負擔 分析	23
1.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析	23
2.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析	27
3.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析	30
4. 要 約	32
IV. 企業 寄附行爲의 動機分析	34
1. 問題의 提起	34
2. 理論的 模型	36
3. 既存의 實證分析 結果	44
4. 實證分析	47
5. 政策的 示唆點	55
V. 우리나라의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	57
1. 寄附金의 範圍	57
2. 全額損金算入寄附金	60

3. 指定寄附金	62
4. 非指定寄附金	67
5. 寄附金の計算	67
VI. 主要外國의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	68
1. 美國	68
2. 日本	74
3. 政策的 示唆點	83
VII.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85
1. 寄附金 範圍의 調整	85
2. 損金算入限度額 算定方法의 調整	88
3. 寄附金 募集方法의 改善	91
VIII. 要約 및 結論	95
參考文獻	99
附 錄	102

表 目 次

〈表 2-1〉 分析對象 企業數	13
〈表 2-2〉 國內企業의 寄附金支出 現況	14
〈表 2-3〉 寄附金支出 推移	16
〈表 2-4〉 上場法人의 寄附金支出 推移	17
〈表 2-5〉 非上場法人의 寄附金支出 推移	17
〈表 2-6〉 業體當 寄附金支出 推移	18
〈表 2-7〉 分析對象 企業의 產業別 分布	19
〈表 2-8〉 產業別 寄附金支出 現況(1995)	20
〈表 2-9〉 產業別 業體當 寄附金支出 推移	22
〈表 3-1〉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1991)	24
〈表 3-2〉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1995)	25
〈表 3-3〉 法人所得 階層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1)	26
〈表 3-4〉 法人所得 階層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5)	26
〈表 3-5〉 資本金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1)	28
〈表 3-6〉 資本金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5)	28
〈表 3-7〉 賣出額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1)	30
〈表 3-8〉 賣出額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5)	31
〈表 4-1〉 年度別 分析對象 企業數	51
〈表 4-2〉 分析變數의 基礎統計值	52
〈表 4-3〉 企業 寄附行爲의 動機에 관한 推定結果	53
〈表 5-1〉 指定寄附金의 範圍(1)	63
〈表 5-2〉 指定寄附金의 範圍(2)	65
〈表 6-1〉 非課稅團體와 慈善寄附金의 關係	70

〈表 6-2〉 日本의 寄附金稅制의 概要	82
〈表 6-3〉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의 國際比較	84

圖 目 次

[圖 3-1] 法人所得 階層別(10분위) 寄附金負擔率	27
[圖 3-2] 資本金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率	29
[圖 3-3] 賣出額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率	32

I. 序 論

기업의 寄附金은 租稅와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公課金과는 구별된다. 公課金은 國稅徵收法에 규정된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國稅·關稅·臨時輸入附加稅 및 이에 관계되는 加算金 및 滯納處分費 이외의 것으로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寄附金과 公課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이 이를 부담함에 있어서 強制性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寄附金은 현금·성금·찬조금·후원금·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企業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권력이 직접·간접으로 개입되어 강제로 모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寄附金은 公課金과 마찬가지로 準租稅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準租稅負擔實態를 분석한 李春槿(1991)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1994)의 연구에서는 寄附金을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일 企業의 寄附行爲가 이윤극대화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寄附金을 準租稅로 간주하여 기업의 寄附行爲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企業의 입장에서 보면 공권력이 직접·간접으로 개입되어 강제로 모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寄附를 하는 것이 利潤極大化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寄附金에 대한 政策方向을 정하기 위해서는 企業이 寄附行爲를 하는 動機에 관한 研究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寄附行爲에 관한 연구는 주로 美國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기업의 기부

행위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美國의 경우 企業에 의한 기부금의 규모가 個人에 의한 기부금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企業이 왜 寄附行爲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企業의 기부가 企業의 利潤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지 經營자의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企業의 利潤極大化는 매출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한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하게 되면 그 企業에 대한 대중의 선호가 더 높아지게 되어 그 기업이 生産하는 제품의 賣出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한 기업이 그 기업이 위치한 地域社會에 寄附金を 지출하여 그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그 기업이 지불해야 할 賃金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企業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經營者の 效用極大化는 기존의 연구들이 채용하고 있는 Williamson (1963)의 經營者裁量模型(managerial discretion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經營者는 利潤 중에서 株主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의로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經營者는 불필요하게 안락한 사무실, 지나치게 많은 직원의 고용, 과도한 낭비, 필요 이상의 봉급 등을 위해 이윤 중 일부를 지출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寄附金도 이러한 支出과 마찬가지로 經營者の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經營者는 기부행위가 企業의 사회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寄附金의 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企業利潤을 희생하는 대신에 經營者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企業의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寄附行爲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租稅政策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기부행위가 이윤극대화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寄附金을 一般經費로 인정하여 損金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기부행위가 효용극대화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寄附金을 損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株主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資源을 非效率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기업의 寄附行爲가 利潤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實證分析하였다. 또한 寄附金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主要 外國의 租稅制度和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本 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 I 章의 序論에 이어 第 II 章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寄附金支出 現況을 파악해 보았다. 第 III 章에서는 법인소득 계층별, 자본금 구간별, 매출액 구간별로 寄附金負擔을 분석해 보았다. 第 IV 章에서는 기업이 기부행위를 하는 동기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第 V 章에서는 寄附金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의 稅制를 요약하였다. 第 VI 章에서는 美國과 日本의 寄附金 關聯 稅制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파악해 보았다. 第 VII 章에서는 現行 寄附金 關聯 稅制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第 VIII 章에서는 본 보고서를 要約하고 結論을 맺었다.

II.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金支出 現況

1. 寄附金支出 分析의 概要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金支出 現況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 韓國信用情報(株)의 企業財務諸表 SAS Dataset을 이용하였다. 分析對象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의 財務諸表 SAS Dataset에 수록되어 있는 全體 企業으로 하였다. 다만 賣出額, 資本金, 또는 純利益이 파악되지 않은 企業은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析對象에서 제외하였다.

分析對象 企業數는 9개년에 걸쳐 上場法人이 총 4,616개,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이 총 4만 4,538개로 전체는 4만 9,154개였다. 199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分析對象 企業은 上場法人이 609개,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이 5,775개로 전체는 6,384개였다.

본 보고서에서 파악된 寄附金의 規模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보다 過小評價되고 있다¹⁾. 첫째,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上場法人,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95년의 조사대상인 6,384개 企業은 1995년의 우리나라 全體 法人數 12만 5,413개의 5.1%에 불과하기 때문에 上場法人,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이 아닌 企業이 많은 寄附金을 지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소평가된 寄附金의 規模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調査對象에서 누락된 上場法人이 많다는 점이다. 1995년의 경

1) 실제로 國稅廳이 파악한 寄附金支出 規模는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分析對象 企業이 지출한 寄附金 規模에 비해 훨씬 크다.

우를 예로 들면 본 보고서에서는 702개의 실제 上場法人의 13.2%에 해당하는 93개 企業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런데 1995년의 경우 上場法人의 94%²⁾가 寄附金を 지출하고 있으므로 87개 정도의 上場法人이 지출한 寄附金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장법인의 업체당 기부금 지출액은 15억 3,300만원³⁾이므로 누락된 상장법인의 寄附金規模는 1,33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本章의 寄附金支出 實態分析은 우리나라 企業全體가 아닌 上場法人,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表 2-1〉 分析對象 企業數

(單位: 個)

	上場法人	非上場法人	合 計
1987	314 (316)	2,858 (3,759)	3,172 (4,075)
1988	389 (390)	3,444 (4,156)	3,833 (4,546)
1989	502 (503)	3,680 (4,481)	4,182 (4,984)
1990	536 (538)	4,624 (5,227)	5,160 (5,765)
1991	558 (560)	5,808 (6,185)	6,366 (6,745)
1992	556 (558)	5,994 (6,285)	6,550 (6,843)
1993	566 (567)	5,962 (6,195)	6,528 (6,762)
1994	586 (587)	6,393 (6,662)	6,979 (7,249)
1995	609 (610)	5,775 (5,927)	6,384 (6,537)
合 計	4,616 (4,629)	44,538 (48,877)	49,154 (53,506)

註: ()안은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SAS Dataset에 수록된 企業數임.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2) 〈表 2-4〉 참조.

3) 〈表 2-6〉 참조.

2. 寄附金支出 推移

國稅廳이 파악한 기업의 寄附金支出 規模는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업이 지출한 寄附金の 규모는 1993년에 1조 4,695억원, 1994년에 2조 140억원, 1995년에 2조 7,044억원이었다. 1994년의 기부금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37.1%가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전년대비 34.3%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企業 寄附金の 規模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경영전략 측면에서 기업들이 公益事業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고 있고 기업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國稅廳은 파악하고 있다⁴⁾.

그러나 기부금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부금은 企業經營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제개편시마다 법인세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法人稅 稅收와 비교해 본 기부금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法人稅 稅收에 대비한 寄附金の 비율은 1993년에 25.1%, 1994년에 27.3%, 1995년에는 31.2% 수준이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2-2> 國內企業의 寄附金支出 現況

(單位 : 億圓, %)

	1993	1994	1995
寄附金(A)	14,695	20,140 (37.1)	27,044 (34.3)
法人稅(B)	58,623	73,876 (26.0)	86,626 (17.3)
A/B	25.1	27.3	31.2

註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 『韓國經濟新聞』, 1996. 9. 21.

國稅廳, 『1996 國稅統計年報』, 1996.

4) 『韓國經濟新聞』, 1996. 9. 21.

分析對象 企業의 寄附金支出 推移는 <表 2-3>과 같다. 分析對象 企業 중에서 寄附金を 지출하고 있는 企業의 비율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年平均 72.7%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87년에 82.7%로 가장 높았으며, 1994년에 67.1%로 가장 낮았다.

寄附金の 規模는 1987년 3,457억원에서 1995년 1조 5,547억원으로 350%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分析對象 企業의 수가 101%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寄附金 規模의 증가는 팔목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寄附金 規模의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297%가 증가한 賣出額에 비해 그 增加幅이 조금 큰 편이며 390%가 증가한 純利益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조금 작은 편이다.

賣出額 대비 寄附金の 비율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年平均 0.27% 정도에 불과하므로 크게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純利益에 대비한 기부금의 비율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年平均 16.5%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1988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9.5%를 기록하였으며, 1993년에는 무려 28.9%까지 높아졌다. 1993년의 경우 만일 企業들이 寄附金を 지출하지 않았다면 稅金を 고려하지 않았을 때 純利益은 28.9% 증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純利益에 대비한 寄附金の 비율은 1993년에 最高値를 기록한 후 1994년에 18.3%, 1995년에 15.2%로 크게 낮아졌다. 1994년과 1995년에 이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寄附金 規模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경기가 비교적 호조를 띠어 純利益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分析對象 企業을 上場法人과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이하 '非上場法人'이라 함)으로 나누어 각각의 寄附金支出 推移를 <表 2-4>와 <表 2-5>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분석대상 기업 중에서 寄附金を 지출하고 있는 企業의 비율은 上場法人이 年平均 95%를 기록하여 年平均 70.3%에 그친 非上場法人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上場法人은 자발적으로 이윤의 사회환원 또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非上場法人보다 더 많

〈表 2-3〉 寄附金支出 推移

(單位: 個, 億圓, %)

	總 企業數 (A)	寄附金 支出 企業數 (B)	寄附金 (C)	税金 (D)	賣出額 (E)	純利益 (F)	B/A	C/E	C/F
1987	3,172	2,624	3,457	15,963	1,338,353	20,861	82.7	0.26	16.6
1988	3,833	2,942	3,861	22,149	1,627,099	40,524	76.8	0.24	9.5
1989	4,182	3,225	4,279	25,661	1,813,409	38,195	77.1	0.24	11.2
1990	5,160	4,024	4,116	27,702	2,223,222	33,409	78.0	0.19	12.3
1991	6,366	4,674	5,748	30,559	2,799,151	40,517	73.4	0.21	14.2
1992	6,550	4,610	7,870	31,743	3,233,659	32,712	70.4	0.24	24.1
1993	6,528	4,396	10,445	36,796	3,609,699	36,104	67.3	0.29	28.9
1994	6,979	4,685	14,405	48,452	4,330,483	78,569	67.1	0.33	18.3
1995	6,384	4,531	15,547	53,201	5,315,935	102,293	71.0	0.29	15.2
合計	49,154	35,711	69,728	292,227	26,291,010	423,183	72.7	0.27	16.5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많이 노력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공권력이 개입되어 강제로 기부금이 모금되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寄附金の規模는 1987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 모두 上場法人이 非上場法人보다 컸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寄附金規模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추세에 있다.

賣出額에 대비한 寄附金の 비율은 上場法人이 연평균 0.26%, 非上場法人이 연평균 0.2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純利益에 대비한 寄附金の 비율은 오히려 非上場法人이 上場法人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上場法人의 경우 연평균 14.6%였으며, 非上場法人의 경우는 연평균 19.5%였다. 賣出額에 대비한 寄附金の 비율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賣出額利益率의 차이로 인해 純利益에 대비한 寄附金の 비율이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非上場法人의 매출액이익률은 1.4%로서 上場法人의 매출액이익률 1.8%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寄附金은 上場法人보다 非上場法人의 경영에 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2-4〉 上場法人의 寄附金支出 推移

(單位: 個, 億원, %)

	總 企業數 (A)	寄附金 支出 企業數 (B)	寄附金 (C)	税金 (D)	賣出額 (E)	純利益 (F)	B/A	C/E	C/F
1987	314	306	1,331	6,757	717,731	7,493	97.5	0.19	17.8
1988	389	374	2,170	10,202	903,115	16,385	96.1	0.24	13.2
1989	502	481	2,250	14,551	1,089,294	26,880	95.8	0.21	8.4
1990	536	516	2,404	14,072	1,292,605	25,146	96.3	0.19	9.6
1991	558	530	2,911	14,694	1,594,914	28,839	95.0	0.18	10.1
1992	556	522	4,072	14,236	1,813,253	24,912	93.9	0.22	16.3
1993	566	531	5,461	16,253	2,008,736	20,242	93.8	0.27	27.0
1994	586	553	8,621	22,187	2,431,747	45,437	94.4	0.35	19.0
1995	609	572	9,337	25,950	3,078,110	68,388	93.9	0.30	13.7
合計	4,616	4,385	38,557	138,902	14,929,505	263,722	95.0	0.26	14.6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表 2-5〉 非上場法人의 寄附金支出 推移

(單位: 個, 億원, %)

	總 企業數 (A)	寄附金 支出 企業數 (B)	寄附金 (C)	税金 (D)	賣出額 (E)	純利益 (F)	B/A	C/E	C/F
1987	2,858	2,318	2,126	9,206	620,622	13,368	81.1	0.34	15.9
1988	3,444	2,568	1,691	11,947	723,984	24,139	74.6	0.23	7.0
1989	3,680	2,744	2,029	11,110	724,115	11,315	74.6	0.28	17.9
1990	4,624	3,508	1,711	13,630	930,617	8,263	75.9	0.18	20.7
1991	5,808	4,144	2,837	15,866	1,204,237	11,678	71.4	0.24	24.3
1992	5,994	4,088	3,798	17,508	1,420,406	7,800	68.2	0.27	48.7
1993	5,962	3,865	4,984	20,543	1,600,963	15,862	64.8	0.31	31.4
1994	6,393	4,132	5,784	26,265	1,898,736	33,131	64.6	0.30	17.5
1995	5,775	3,959	6,211	27,250	2,237,826	33,905	68.6	0.28	18.3
合計	44,538	31,326	31,171	153,325	11,361,505	159,461	70.3	0.27	19.5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業體當 寄附金支出의 推移는 <表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全體 分析對象 企業의 업체당 평균 기부금은 1990년에 가장 낮아 8천만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 4,400만원을 기록하였다.

業體當 寄附金支出 規模는 上場法人이 非上場法人에 비해 대체로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上場法人의 業體當 寄附金支出額은 1987년에 가장 낮아 4억 2,4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15억 3,300만원을 기록하였다. 非上場法人의 경우에는 1987년 7,400만원에서 1990년 3,7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1억 800만원을 기록하였다.

<表 2-6> 業體當 寄附金支出 推移

(單位：百萬元)

	上場法人	非上場法人	全 體
1987	424	74	109
1988	558	49	101
1989	448	55	102
1990	449	37	80
1991	522	49	90
1992	732	63	120
1993	965	84	160
1994	1,471	90	206
1995	1,533	108	244

資料：韓國信用情報, 財務DB.

3. 産業別 寄附金支出 現況

분석대상 기업의 産業別 分布를 살펴보면 <表 2-7>과 같다. 분석대상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製造業이며, 그 다음은 建設業, 都小賣業, 그리고 不動產賃貸業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의 경우 6,384개의 分析對象 企業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3,782개가 製造業이었으며, 15.4%에 해당하는 986개 기업이 建設業, 8.9%에 해당하는 565개 기업이 都小賣業, 그리고 5.9%에 해당하는 375개 기업이 不動產貸業이었다.

〈表 2-7〉 分析對象 企業의 産業別 分布

(單位: 個,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농업	14 (0.4)	17 (0.4)	17 (0.4)	18 (0.3)	25 (0.4)	25 (0.4)	24 (0.4)	19 (0.3)	23 (0.4)
어업	28 (0.9)	32 (0.8)	35 (0.8)	37 (0.7)	43 (0.7)	38 (0.6)	36 (0.6)	36 (0.5)	27 (0.4)
광업	32 (1.0)	40 (1.0)	46 (1.1)	51 (1.0)	57 (0.9)	56 (0.9)	55 (0.8)	57 (0.8)	48 (0.8)
제조업	2,101 (66.2)	2,556 (66.7)	2,708 (64.8)	3,255 (63.1)	3,890 (61.1)	3,931 (60.0)	3,897 (59.7)	4,143 (59.4)	3,782 (59.2)
전기·가스·수도	20 (0.6)	24 (0.6)	25 (0.6)	29 (0.6)	31 (0.5)	35 (0.5)	34 (0.5)	35 (0.5)	33 (0.5)
건설	318 (10.0)	364 (9.5)	456 (10.9)	670 (13.0)	932 (14.6)	983 (15.0)	1,012 (15.5)	1,121 (16.1)	986 (15.4)
도소매	259 (8.2)	315 (8.2)	347 (8.3)	438 (8.5)	553 (8.7)	572 (8.7)	571 (8.7)	603 (8.6)	565 (8.9)
음식·숙박	68 (2.1)	93 (2.4)	104 (2.5)	122 (2.4)	144 (2.3)	148 (2.3)	141 (2.2)	142 (2.0)	128 (2.0)
운수·창고·통신	132 (4.2)	155 (4.0)	168 (4.0)	192 (3.7)	232 (3.6)	249 (3.8)	243 (3.7)	261 (3.7)	238 (3.7)
부동산임대업	140 (4.4)	166 (4.3)	193 (4.6)	244 (4.7)	327 (5.1)	364 (5.6)	365 (5.6)	389 (5.6)	375 (5.9)
교육서비스	0 (0.0)	0 (0.0)	0 (0.0)	1 (0.0)	2 (0.0)	2 (0.0)	1 (0.0)	1 (0.0)	1 (0.0)
보건·사회·복지	0 (0.0)	0 (0.0)	0 (0.0)	1 (0.0)	1 (0.0)	1 (0.0)	2 (0.0)	2 (0.0)	0 (0.0)
기타서비스	60 (1.9)	71 (1.9)	83 (2.0)	102 (2.0)	129 (2.0)	146 (2.2)	147 (2.3)	170 (2.4)	178 (2.8)
합계	3,172 (100.0)	3,833 (100.0)	4,182 (100.0)	5,160 (100.0)	6,366 (100.0)	6,550 (100.0)	6,528 (100.0)	6,979 (100.0)	6,384 (100.0)

註: ()안은 백분율임.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1995년의 産業別 寄附金支出 現況은 <表 2-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부금지출 규모는 製造業이 1조 417억원으로 가장 컸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수는 전체 분석대상 기업수의 59.2%를 차지하였는데, 제조업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높은 67% 수준이었다. 製造業 다음으로는 建設業이 1,436억원의 寄附金을 지출하였으며, 運輸·倉庫·通信業이 1,417억원, 都小賣業이 1,12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賣出額에 대한 寄附金의 비율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어업과 교육서비스업으로 0.07%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무려 1.61%였다.

<表 2-8> 産業別 寄附金支出 現況(1995)

(單位：個, 億원, %)

	總 企業數 (A)	寄附金 支出 企業數 (B)	寄附金 (C)	税金 (D)	賣出額 (E)	純利益 (F)	B/A	C/E	C/F
농업	23	17	5	94	3,719	-210	73.9	0.14	-2.5
어업	27	19	7	53	8,998	-48	70.4	0.07	-13.8
광업	48	43	24	173	8,420	-54	89.6	0.29	-45.5
제조업	3,782	2,675	10,417	33,135	2,931,862	86,370	70.7	0.36	12.1
전기·가스·수도	33	31	393	4,130	128,668	9,774	93.9	0.31	4.0
건설	986	707	1,436	4,620	594,249	-649	71.7	0.24	-221.2
도소매	565	372	1,120	3,824	1,237,672	208	65.8	0.09	538.0
음식·숙박	128	102	139	691	26,519	-634	79.7	0.53	-22.0
운수·창고·통신	238	189	1,417	4,125	260,661	8,108	79.4	0.54	17.5
부동산임대업	375	238	171	1,675	89,153	1,422	63.5	0.19	12.0
교육서비스	1	1	0.09	5	127	5	100.0	0.07	1.8
기타서비스	178	137	417	675	25,888	-2,000	77.0	1.61	-20.9
합계	6,384	4,531	15,547	53,201	5,315,935	102,293	71.0	0.29	15.2

資料：韓國信用情報, 財務DB.

純利益에 대한 寄附金の 비율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純損失을 내고 있는 산업 중에서 과도하게 많은 기부금을 부담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는 점이다. 농업, 어업, 광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純利益을 내지 못한 산업이었다. 그 중에서 建設業은 649억원의 純損失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36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은 純利益을 낼 수 있었던 산업이 과다한 기부금의 지출로 인해 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억원의 純損失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7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純損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산업이 과다한 기부금의 지출로 인해 더 큰 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둘째, 純利益을 낸 산업 중에서도 순이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기부금을 부담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는 점이다. 都小賣業의 경우 純利益 208억원의 5배가 넘는 1,120억원을 기부하여 純利益에 대한 寄附金の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純利益의 규모가 5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었던 산업이 과다한 기부금의 지출로 인해 훨씬 작은 규모의 純利益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産業別 業體當 寄附金支出의 추이는 <表 2-9>와 같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산업별 업체당 기부금은 전체적으로 124% 증가하였다. 이를 각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758%의 增加率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562%의 증가율을 보인 運輸·倉庫·通信業, 350%의 증가율을 보인 기타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반면 鑛業은 같은 기간 동안 49%가 감소하였으며, 漁業은 무려 73%나 감소하였다.

한편 1995년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업이 업체당 가장 많은 11억 9,200만원의 寄附金を 支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5억 9,600만원의 寄附金を 지출한 운수·창고·통신업, 2억 7,500만원을 지출한 제조업의 순이었다.

〈表 2-9〉 産業別 業體當 寄附金支出 推移

(單位：百萬圓)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농업	7	10	7	6	7	35	30	29	23
어업	89	33	19	20	15	12	6	9	24
광업	100	26	19	26	44	49	14	41	51
제조업	133	97	95	85	81	97	144	219	275
전기·가스·수도	139	326	391	265	495	952	1,190	1,237	1,192
건설	67	71	58	73	57	70	85	88	146
도소매	62	56	61	65	72	104	129	131	198
음식·숙박	30	68	81	61	44	30	46	79	109
운수·창고·통신	90	454	528	122	503	828	975	953	596
부동산임대업	22	35	54	50	39	40	46	47	46
교육서비스	0	0	0	15	10	5	8	26	9
보건·사회·복지	0	0	0	5	2	1	5	3	0
기타서비스	52	25	44	53	84	99	132	174	234
全體	109	101	102	80	90	120	160	206	244

註：産業別 業體當 寄附金은 産業 全體의 기부금을 分析對象 企業數로 나누어 구한 금액임.

資料：韓國信用情報, 財務DB.

Ⅲ.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金負擔 分析

寄附金은 企業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公權力이 직접·간접으로 개입되어 강제로 모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寄附金이 公課金과 마찬가지로 준조세로 인식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準租稅 負擔實態를 분석한 李春權(1991)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1994)의 연구에서는 寄附金을 準租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本章에서도 寄附金을 일단 準租稅로 간주하고 租稅負擔의 衡平性 研究에서 흔히 행해지는 방법을 이용하여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 그리고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를 분석하였다.

1.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析

먼저 法人所得의 계층을 임의로 구분하여 계층별 기부금부담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991년과 1995년의 법인소득 계층별 기부금부담 분포는 각각 <表 3-1>과 <表 3-2>에 나타나 있다. 純利益을 내지 못하는 계층을 제외하면 두 연도 모두 平均 純利益의 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平均 寄附金의 규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純損失을 내는 계층의 기업들이 1991년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의 純利益을 내는 계층의 기업들보다, 1995년의 경우는 1억원 미만과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純利益을 내는 두 계층의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寄附金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純損失을 내는 계층에 속하는 기업 중에는 영세한 기업도 많이 있지

만 大企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純損失의 규모가 큰 기업은 大企業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大企業은 비록 경영상 赤字를 보고 있더라도 기업의 지명도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寄附行爲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率¹⁾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이 비율은 純利益 1억원 미만의 계층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가면서 높았다 낮았다는 반복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율은 純利益 1억원 미만의 계층이 19.1%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가면서 역시 높았다 낮았다는 반복하고 있다.

〈表 3-1〉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1991)

(單位：個, 百萬圓, %)

	總 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純利益 (C)	平均 寄附金 (D)	B/A	D/C
0원 미만	1,498	1,006	-1,871	21	67.2	-1.1
0~1억원 미만	1,225	717	48	13	58.5	27.1
1억~10억원 미만	2,648	2,043	367	25	77.2	6.9
10억~50억원 미만	791	713	2,123	148	90.1	7.0
50억~100억원 미만	118	113	6,796	384	95.8	5.7
100억~500억원 미만	79	75	20,173	1,492	94.9	7.4
500억~1,000억원 미만	3	3	67,008	4,545	100.0	6.8
1,000억~1조원 미만	4	4	386,762	41,680	100.0	10.8
全 體	6,366	4,674	636	90	73.4	14.2

資料：韓國信用情報, 財務DB.

1)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率은 平均純利益에 대비한 平均寄附金の 비율을 말한다.

〈表 3-2〉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1995)

(單位 : 個, 百萬元, %)

	總 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純利益 (C)	平均 寄附金 (D)	B/A	D/C
0원 미만	1,751	1,113	-3,090	54	63.6	-1.8
0~1억원 미만	683	406	51	10	59.4	19.1
1억~10억원 미만	2,497	1,754	395	25	70.2	6.4
10억~50억원 미만	1,109	933	2,181	111	84.1	5.1
50억~100억원 미만	177	167	6,823	575	94.4	8.4
100억~500억원 미만	140	134	19,005	2,095	95.7	11.0
500억~1,000억원 미만	12	10	67,850	6,845	83.3	10.1
1,000억~1조원 미만	14	13	357,902	35,500	92.9	9.9
1조원 이상	1	1	2,505,476	292,204	100.0	11.7
全 體	6,384	4,531	1,602	244	71.0	15.2

資料 : 韓國信用情報, 財務DB.

법인소득의 계층을 임의로 구분하여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率 分布를 살펴보았으나 일정한 패턴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法人所得의 구간을 10분위로 나누어 법인소득 계층별 기부금부담 분포를 살펴보았다. 앞의 분석에서는 法人所得의 階層을 임의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階層別 企業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租稅負擔의 衡平性 研究에서 많이 행해지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여 法人所得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寄附金負擔率이 증가하는 두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10분위로 나누어 살펴본 1991년과 1995년의 법인소득 계층별 기부금부담 분포는 각각 〈表 3-3〉과 〈表 3-4〉에 나타나 있다. 기부금지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1년과 1995년 모두 純利益을 내지 못한 계층의 경우 平均 純損失의 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寄附金을 지출한 企業의 비율이 높았으며, 純利益을 낸 계층에서는 平均 純利益의 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이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純利益이나 純損失의 규모가 클수록 그 기업

은 大企業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들 大企業은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기업
의 지명도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寄附行爲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表 3-3〉 法人所得 階層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1)

(單位：個, 百萬圓, %)

純利益 分位	總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純利益 (C)	平均 寄附金 (D)	B/A	D/C
1	636	473	-3,995	37	74.4	-0.9
2	637	411	-388	8	64.5	-2.0
3	636	345	-12	13	54.2	-108.5
4	637	379	57	12	59.5	22.0
5	636	435	116	14	68.4	12.4
6	637	452	198	19	71.0	9.4
7	637	481	322	29	75.5	9.1
8	636	545	543	26	85.7	4.8
9	637	556	1,087	68	87.3	6.3
10	637	597	8,428	676	93.7	8.0
全 體	6,366	4,674	636	90	73.4	14.2

資料：韓國信用情報, 財務DB.

〈表 3-4〉 法人所得 階層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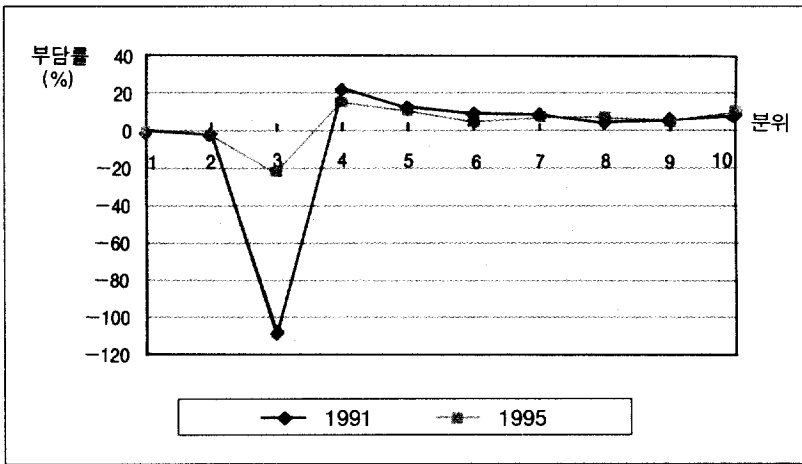
(單位：個, 百萬圓, %)

純利益 分位	總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純利益 (C)	平均 寄附金 (D)	B/A	D/C
1	638	461	-7,374	84	72.3	-1.1
2	638	390	-938	30	61.1	-3.2
3	639	361	-164	36	56.5	-21.9
4	638	378	71	11	59.2	15.2
5	638	419	166	17	65.7	10.4
6	639	445	290	14	69.6	5.0
7	638	466	489	34	73.0	7.0
8	639	483	881	62	75.6	7.1
9	638	536	1,793	91	84.0	5.1
10	639	592	20,784	2,053	92.6	9.9
全 體	6,384	4,531	1,602	244	71.0	15.2

資料：韓國信用情報, 財務DB.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率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3-1]과 같다. 일반적으로 法人所得이 큰 계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寄附金을 더 많이 부담하는 累進的 構造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累進的 構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1991년의 경우 4~8분위 사이에서는 오히려 法人所得이 큰 계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寄附金을 더 적게 부담하는 逆進的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에도 累進的 構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1991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法人所得이 큰 계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寄附金을 더 적게 부담하는 逆進的인 성격을 띠는 구간은 4~6분위 사이로 그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圖 3-1] 法人所得 階層別(10분위) 寄附金負擔率



2.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析

10분위로 나누어 구한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表 3-5>와 <表 3-6>에서는 資本金 區間을 10분위로 나누어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를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資本金의 규모가 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寄附金負擔率이 증가하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데 살펴본다.

〈表 3-5〉 資本金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1)

(單位: 個, 百萬圓, %)

資本金 分位	總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資本金 (C)	平均 寄附金 (D)	B/A	D/C
1	636	381	137	11	59.9	8.4
2	637	398	305	12	62.5	3.9
3	636	407	460	9	64.0	2.1
4	637	437	617	14	68.6	2.3
5	636	441	889	12	69.3	1.3
6	637	469	1,200	22	73.6	1.8
7	637	500	1,778	27	78.5	1.5
8	636	514	2,766	31	80.8	1.1
9	637	549	5,066	101	86.2	2.0
10	637	578	39,766	662	90.7	1.7
全 體	6,366	4,674	5,301	90	73.4	1.7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表 3-6〉 資本金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5)

(單位: 個, 百萬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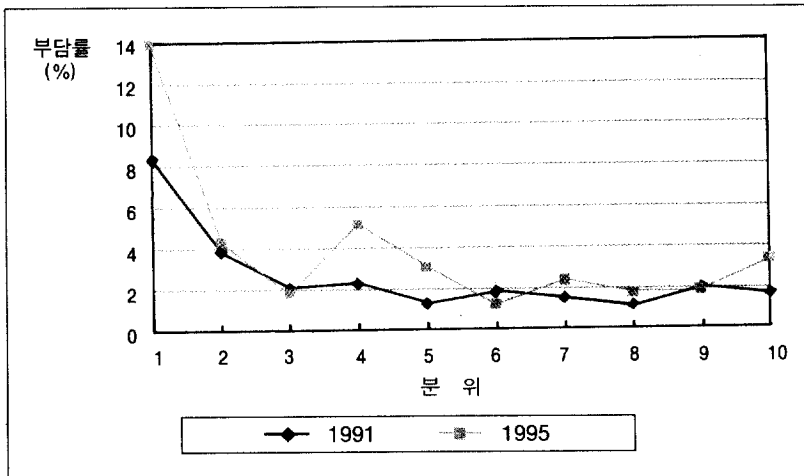
資本金 分位	總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資本金 (C)	平均 寄附金 (D)	B/A	D/C
1	638	370	178	25	58.0	13.9
2	638	404	440	19	63.3	4.3
3	639	424	696	13	66.4	1.8
4	638	415	985	50	65.0	5.1
5	638	421	1,353	40	66.0	3.0
6	639	456	1,932	23	71.4	1.2
7	638	452	2,755	64	70.8	2.3
8	639	488	4,294	72	76.4	1.7
9	638	520	8,019	145	81.5	1.8
10	639	581	60,069	1,983	90.9	3.3
全 體	6,384	4,531	8,078	244	71.0	3.0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기부금지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1년과 1995년 모두 資本金의 규모가 큰 분위로 갈수록 寄附金을 지출하는 企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資本金의 규모가 클수록 그 기업은 大企業에 속하게 되며 이들 大企業은 기업의 지명도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寄附行爲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率²⁾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3-2]와 같다. 1991년에는 1~3분위 사이에서 자본금이 큰 계층일수록 자본금에 비해 寄附金을 더 적게 지출하는 逆進의인 성격을 띠었으나, 4~10분위 사이에서는 이 비율은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본금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가면서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1~3분위 사이와 4~6분위 사이에서 資本金이 큰 계층일수록 자본금에 비해 寄附金을 더 적게 지출하는 逆進의인 성격을 띠었으나, 그 이외의 분위에서는 자본금과 기부금의 규모간에 일정한 상관관계

[圖 3-2] 資本金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率



2)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率은 平均 資本金에 대비한 平均 寄附金의 비율을 말한다.

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析

10분위로 나누어 구한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表 3-7>과 <表 3-8>에서는 賣出額 區間을 10분위로 나누어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賣出額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寄附金負擔率이 증가하는 두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기부금지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1년과 1995년 모두 賣出額의 규모가 큰 분위로 갈수록 寄附金을 지출하는 企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賣出額의 규모가 클수록 그 기업은 大企業에 속할 것이며 이들 大企業은 기업의 지명도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寄附行爲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表 3-7> 賣出額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1)

(單位: 個, 百萬元, %)

賣出額 分位	總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賣出額 (C)	平均 寄附金 (D)	B/A	D/C
1	636	332	980	8	52.2	0.80
2	637	352	3,163	8	55.3	0.25
3	636	387	5,080	9	60.8	0.17
4	637	426	7,008	8	66.9	0.11
5	636	464	9,139	12	73.0	0.13
6	637	487	11,833	18	76.5	0.16
7	637	507	15,765	26	79.6	0.16
8	636	531	22,519	36	83.5	0.16
9	637	574	38,246	76	90.1	0.20
10	637	614	325,753	702	96.4	0.22
全 體	6,366	4,674	43,970	90	73.4	0.20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表 3-8〉 賣出額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 分布(1995)

(單位: 個, 百萬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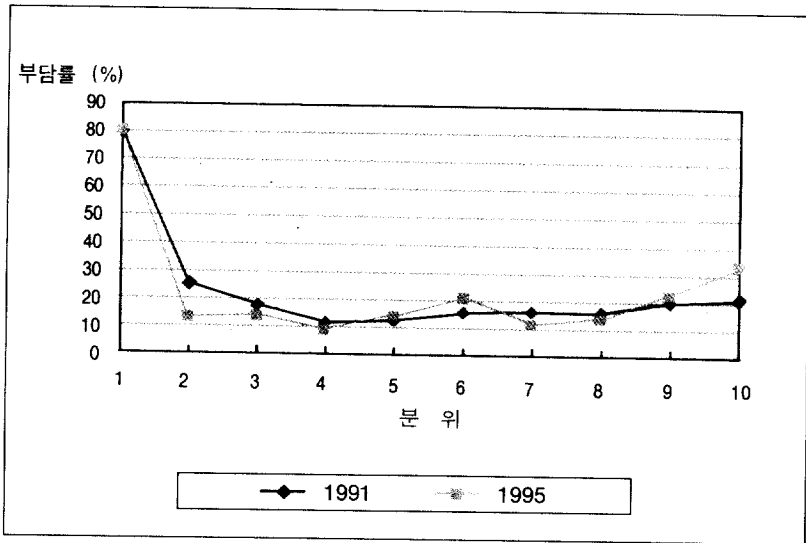
賣出額 分位	總企業數 (A)	寄附金支出 企業數 (B)	平均 賣出額 (C)	平均 寄附金 (D)	B/A	D/C
1	638	319	2,008	16	50.0	0.81
2	638	361	6,113	8	56.6	0.13
3	639	400	9,147	13	62.6	0.14
4	638	437	12,050	11	68.5	0.09
5	638	423	15,176	21	66.3	0.14
6	639	435	19,516	40	68.1	0.21
7	638	477	26,055	31	74.8	0.12
8	639	517	38,306	54	80.9	0.14
9	638	556	68,455	153	87.1	0.22
10	639	606	635,291	2,087	94.8	0.33
全 體	6,384	4,531	83,270	244	71.0	0.29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DB.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率³⁾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3-3]과 같다. 1991년의 경우 1~4분위 사이에서는 賣出額이 큰 계층일수록 매출액에 비해 寄附金を 더 적게 지출하는 역진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이와는 정반대로 4~10분위 사이에서는 매출액이 큰 계층일수록 매출액에 비해 寄附金を 더 많이 지출하는 누진적인 성격을 띠었다. 한편 1995년에는 1~6분위 사이에 속하는 구간에서는 매출액과 기부금의 규모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7~10분위 사이에서는 매출액이 큰 계층일수록 매출액에 비례해 寄附金を 더 많이 지출하는 누진적인 성격을 띠었다.

3)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率은 平均 賣出額에 대비한 平均 寄附金의 비율을 말한다.

[圖 3-3] 賣出額 區間別(10분위) 寄附金負擔率



4. 要約

이상에서는 寄附金を 일단 準租稅로 간주하고 租稅負擔의 衡平性 研究에서 흔히 행해지는 방법을 이용하여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 그리고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를 분석해 보았다.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의 구간을 각각 10분위로 나누어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寄附金負擔率이 증가하는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累進的 構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정한 패턴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의 규모가 큰 분위로 갈수록 寄附金を 지출하는 企業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의 규모가 클수록 그 기업은 大企業일 것이며 대기업일수록 기업의 지명도나 광고효과 등을 고

려하여 寄附行爲를 할 가능성이 더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寄附金負擔率이 증가하는 累進的 構造를 보이기 위해서는 분위별 평균 기부금 규모의 증가율이 분위별 平均 純利益, 平均 資本金, 平均 賣出額 規模의 증가율에 비해 각각 커야 하지만 분석결과를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純利益이나 資本金 또는 賣出額 규모의 증가율만큼 기부금 規模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IV. 企業 寄附行爲의 動機分析

1. 問題의 提起

企業의 寄附金은 租稅나 公課企과는 달리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말한다. 寄附行爲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주로 美國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企業보다는 個人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이유는 美國의 경우 기부행위가 대부분 個人에 의해 행해짐에 따라 자연히 企業에 의한 기부행위보다는 個人에 의한 기부행위가 研究者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²⁾.

企業의 寄附行爲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寄附金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Johnson(1966)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產業資料를 이용하여 미래의 寄附金 水準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租稅政策에 대한 寄附行爲의 敏感度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개별기업이 왜 寄附行爲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Clotfelter(1985)와 Navarro(1988)는 개별기업이 寄附行爲를 하는 動機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 두 論文은 기업이 기부행위를 하는 동기를 기업의 利潤極大化

1) 本章의 내용은 金珍洙(1997)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美國의 경우 企業에 의한 寄附金의 規模는 1940년 4천만달러, 1960년 4억 8천만달러, 1980년 25억 5천만달러였으며, 이는 해당 연도의 個人에 의한 寄附金 規模의 3%, 5.3%, 6.7%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動機와 경영자의 效用極大化 動機의 두 가지로 가정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lotfelter의 論文은 Navarro의 論文에 비해 기업이 어떤 동기에서 기부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理論的인 模型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短點이 있다.

企業의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寄附行爲의 動機가 무엇인가에 따라 租稅政策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企業이 利潤極大化의 動機에서 기부를 한다면 寄附金을 경상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損金算入함으로써 稅金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經營者의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寄附金을 경상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損金算入함으로써 稅金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企業이 寄附金을 지출하는 것은 企業의 純利益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결국 주주의 財產權을 경영자가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寄附金은 현금·성금·찬조금·후원금·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公權力이 직접·간접으로 개입되어 강제로 모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公課金과 마찬가지로 準租稅³⁾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⁴⁾. 그러나 비록 寄附金이 강제로 모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企業이 寄附行爲를 하는 이유는 利潤極大化의 動機나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全無한 Navarro類의 연구가 寄附金에 대한 租稅政策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3) 李春權(1991)은 準租稅를 기업활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수한 生産費用과 租稅를 제외시킨 비필수적인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公課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準租稅 負擔實態를 분석한 李春權(1991)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1994)의 연구에서는 寄附金을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章에서는 Navarro(1988)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行爲가 利潤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實證分析하고 있다.

2. 理論的 模型

企業의 寄附行爲는 企業의 利潤極大化와 經營자의 效用極大化의 두 가지 動機에서 행해진다고 가정하자. 本章의 理論的 模型은 Navarro (1988)가 제시한 利潤極大化 模型과 效用極大化 模型을 바탕으로 하되 費用函數를 단순화한 것이다.

가. 利潤極大化 模型

經營者が 寄附行爲를 廣告전략으로 사용하여 제품이미지나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賣出增大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經營者의 목표가 企業의 利潤極大化인 경우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으며, 經營者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生産量과 寄附金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Pi = PQ(P,G) - C[Q(P,G)] - G \dots\dots\dots (4-1)$$

여기서 Π 는 이윤, P 는 價格, Q 는 生産量, G 는 寄附金, C 는 生産費用을 나타낸다. 利潤極大化를 위한 1次條件(first order condition)을 구하기 위해 式 (4-1)을 먼저 Q 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의 式을 구할 수 있다.

$$P + Q \frac{\partial P}{\partial Q} = \frac{\partial C}{\partial Q} \dots\dots\dots (4-2)$$

式 (4-2)의 양변을 P 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rac{P - (\partial C/\partial Q)}{P} = \frac{1}{\eta_p} \dots\dots\dots (4-3)$$

여기서 $\eta_p = - (\partial Q/\partial P)(P/Q)$ 이고 需要의 價格彈力性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式 (4-1)을 G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의 式을 구할 수 있다.

$$P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Q} \frac{\partial Q}{\partial G} + 1 \dots\dots\dots (4-4)$$

式 (4-2)를 式 (4-4)에 대입하여 賣出額에 대한 寄附金の 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frac{G}{S} = \frac{\eta_c}{\eta_p} \dots\dots\dots (4-5)$$

여기서 $S = P \cdot Q$ 이고 賣出額을 나타낸다. 그리고 $\eta_c = (\partial Q/\partial G)(G/Q)$ 이고 寄附金彈力性을 나타낸다. 式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賣出額에 대한 寄附金の 비율은 寄附金彈力性이 커질수록 높아지고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커질수록 낮아진다.

企業의 寄附行爲는 賣出의 증대를 통해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게 하는 한편, 費用의 감소를 통해서도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게 한다. 企業의 寄附行爲가 企業의 費用을 감소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企業의 寄附行爲로 인해 地域社會가 더 좋은 교육, 문화, 건강, 레저시설을 제공한다면 노동자는 임금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寄附가 장기적인 勞動供給을 증가시킨다면 企業은 임금을 낮출 수 있다. 둘째, 企業의 寄附行爲는 企業에 유리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寄附行爲로 인해 형성된 企業의 좋은 이미지는 企業에 불리한 稅金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불리한 規制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費用側面을 式 (4-1)에서 고려해 보자. 비용 C는 生産量 Q뿐만 아니라 寄附金 G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式 (4-1)을 다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Pi = PQ(P,G) - C[Q(P,G),G] - G \dots\dots\dots (4-6)$$

式 (4-6)에 租稅側面을 고려하면 企業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i = (1-t)[PQ(P,G) - C[Q(P,G),G] - G] \dots\dots\dots (4-7)$$

利潤極大化를 위한 1次條件을 구하기 위해 式 (4-7)을 Q와 G에 대해 각각 미분하면, 租稅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의 1次條件인 式 (4-2)와 式 (4-4)를 얻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목표가 이윤극대화인 경우 이윤극대화 모형의 1차조건으로부터 세금의 부과는 寄附金 水準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frac{dG}{dt} = 0 \dots\dots\dots (4-8)$$

이다.

나. 效用極大化 模型

企業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촉진되면 代理人 問題가 발생한다. 主人-代理人 問題에 기초한 전통적인 經營者裁量模型

5) 반면 Navarro(1988)는 費用을 生産量과 環境要因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요인은 個別企業에 의해 지출되는 寄附金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지출되는 寄附金과 稅金에서 지출되는 社會福祉費用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實證分析을 위한 자료의 부재를 인식하고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다.

(Williamson, 1963, 1964)은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經營者는 利潤 중에서 株主에 의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의로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經營者는 불필요하게 안락한 사무실, 지나치게 많은 직원의 고용, 과도한 낭비, 필요 이상의 봉급 등을 위해 이윤 중 일부를 지출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寄附金도 이러한 支出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經營者는 주주에 의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을 寄附金으로 지출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效用을 극대화하게 된다. 둘째, 所有와 經營의 분리 정도가 클수록 경영자의 재량이 커진다. 즉, 所有와 經營의 분리 정도가 크면 經營者는 所有主의 간섭을 받지 않고 쉽게 裁量支出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불완전한 資本市場이 존재한다.

그러나 主人-代理人 問題의 一般論(Jensen and Meckling, 1976)에서는 다음과 같이 經營者裁量模型의 가정들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所有主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업의 所有主는 만일 經營者가 재량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金錢的 補償을 해 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效用極大化 模型 중에서 論議의 편이를 위해 먼저 後者의 경우를 설정해 보자. 經營者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寄附金의 水準 G, 寄附金を 제외한 기타 裁量支出 X, 그리고 生産量 Q를 결정한다면 效用極大化 模型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때 經營者의 裁量利潤 Π_0 는 稅後利潤 Π_R 에서 주주에 의해 경영진이 교체되거나 企業支配權市場에서 기업이 인수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利潤 Π_0 을 차감한 것이다.

$$\max \quad U[G, X] \quad \dots\dots\dots (4-9)$$

$$G, X, Q$$

$$\text{s.t.} \quad \Pi_D = \Pi_R - \Pi_0 \quad \dots\dots\dots (4-10)$$

여기서 $R = P \cdot Q$ 로 總收入을 나타내며, $\Pi_R = (1-t)[R(Q,G) - C[Q(P,G),G] - G - X]$ 이다. 따라서 效用極大化를 위한 「라그랑제」(Lagrange) 函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 = U[G, X] + \lambda[\Pi_0 - (1-t)[R(Q,G) - C[Q(P,G),G] - G - X]] \dots\dots\dots (4-11)$$

이때 L을 極大化시키는 1차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L}{\partial \lambda} = \Pi_0 - (1-t)(R - C - G - X) = 0 \dots\dots\dots (4-12)$$

$$\frac{\partial L}{\partial G} = U_G - \lambda[(1-t)(\frac{\partial R}{\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Q}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G} - 1)] = 0 \dots\dots\dots (4-13)$$

$$\frac{\partial L}{\partial X} = U_X + \lambda(1-t) = 0 \dots\dots\dots (4-14)$$

$$\frac{\partial L}{\partial Q} = -\lambda(1-t)(\frac{\partial R}{\partial Q} - \frac{\partial C}{\partial Q}) = 0 \dots\dots\dots (4-15)$$

여기서 U_G 와 U_X 는 U를 G와 X에 대해 각각 미분한 것으로서 限界效用을 나타낸다. 比較靜學(comparative statics) 分析을 위해 式 (4-12) ~ (4-15)를 全微分하면 다음과 같다.

$$(1-t)dG + (1-t)dX = -Z_1 dt - d\Pi_0 \dots\dots\dots (4-16)$$

$$-(1-t)Z_2 d\lambda + [U_{GG} - \lambda Z_3]dG + U_{GX} dX - \lambda Z_4 dQ = \lambda Z_2 dt \dots\dots\dots (4-17)$$

$$(1-t)d\lambda + U_{XG} dG + U_{XX} dX = \lambda dt \dots\dots\dots (4-18)$$

$$-\lambda Z_5 dG - \lambda Z_6 dQ = 0 \dots\dots\dots (4-19)$$

여기서

$$Z_1 = (R - C - G - X)$$

$$Z_2 = \frac{\partial R}{\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Q}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G} - 1$$

$$Z_3 = (1-t) \left[\frac{\partial^2 R}{\partial G^2} + \frac{\partial^2 R}{\partial G \partial Q}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2 Q}{\partial G^2} \frac{\partial C}{\partial Q} - \frac{\partial^2 C}{\partial Q^2} \left(\frac{\partial Q}{\partial G} \right)^2 - \frac{\partial^2 C}{\partial G^2} - \frac{\partial^2 C}{\partial G \partial Q} \frac{\partial Q}{\partial G} \right]$$

$$Z_4 = (1-t) \left[\frac{\partial^2 R}{\partial G \partial Q} - \frac{\partial^2 C}{\partial Q^2} \frac{\partial Q}{\partial G} \right]$$

$$Z_5 = (1-t) \left[\frac{\partial^2 R}{\partial Q^2} \frac{\partial Q}{\partial G} + \frac{\partial^2 R}{\partial Q \partial G} - \frac{\partial^2 C}{\partial Q^2} \frac{\partial Q}{\partial G} \right]$$

$$Z_6 = (1-t) \left[\frac{\partial^2 R}{\partial Q^2} - \frac{\partial^2 C}{\partial Q^2} \right]$$

이므로 式 (4-16)~(4-19)를 행렬식(matrix form)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bmatrix} 0 & (1-t) & (1-t) & 0 \\ -(1-t)Z_2 & U_{GG} - \lambda Z_3 & U_{GX} & -\lambda Z_4 \\ (1-t) & U_{XG} & U_{XX} & 0 \\ 0 & -\lambda Z_5 & 0 & -\lambda Z_6 \end{bmatrix} \begin{bmatrix} \partial \lambda / \partial \Pi_0 \\ \partial G / \partial \Pi_0 \\ \partial X / \partial \Pi_0 \\ \partial Q / \partial \Pi_0 \end{bmatrix} = \begin{bmatrix} -1 \\ 0 \\ 0 \\ 0 \end{bmatrix}$$

이를 통해 Π_0 의 변화가 G에 미치는 效果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G}{\partial \Pi_0} \Big|_{t=\bar{t}} = \frac{-\lambda Z_6 [-(U_{GX} + U_{XX} Z_2)(1-t)]}{|\bar{H}|} \dots\dots (4-20)$$

여기서 $|\bar{H}| < 0$, $\lambda < 0$, $Z_6 < 0$, $1-t > 0$, $U_{XX} < 0$ 이며, 式 (4-13)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Z_2 < 0$ 이 성립되어야 한다. 만일 U_{GX} 가 加法的(additive) 效用函數라면 그 값은 0이고, 乘法的(multiplicative) 效用函數라면 그 값은 陽(+)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frac{\partial G}{\partial \Pi_0} < 0$ 이다.

같은 방법으로 $\frac{\partial G}{\partial t}$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G}{\partial t} \Big|_{\pi_0 = \bar{\pi}_0} = \frac{-\lambda Z_0 [-(U_{GX} + U_{XX}Z_2)(1-t)Z_1]}{|\bar{H}|} \dots (4-21)$$

여기서 Z_1 은 陽의 값을 갖기 때문에 式 (4-21)은 陰의 값을 갖는다. 즉, 稅率이 증가하면 寄附金支出은 감소한다. 式 (4-20)을 式 (4-21)에 대입하면 다음의 式을 유도할 수 있다.

$$\frac{\partial G}{\partial t} \Big|_{\pi_0 = \bar{\pi}_0} = Z_1 \frac{\partial G}{\partial \Pi_0} \Big|_{t = \bar{t}} < 0 \dots (4-22)$$

다음으로 전통적인 經營者裁量模型을 가정해 보자. 主人-代理人 問題의 一般論에서는 Π_D 가 效用函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Π_D 가 그 자체로 效用을 창출한다기보다는 經營者裁量支出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經營者裁量模型에서는 經營者가 Π_D 를 지출함으로써 效用을 증대시키므로 效用函數에 Π_D 를 포함하여야 하며, 따라서 效用極大化 模型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max U [G, X, \Pi_D] \dots (4-23)$$

$$\text{s.t. } \Pi_D = (1-t)(R-C-G-X) - \Pi_0 \geq 0 \dots (4-24)$$

앞의 모형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frac{\partial G}{\partial \Pi_0}$ 를 구하면 式 (4-25)를 얻을 수 있다.

$$\frac{\partial G}{\partial \Pi_0} \Big|_{t = \bar{t}} = \{U_{\Pi_D} Z_0 [U_{G\Pi_D} U_{XX} - U_{G\Pi_D} U_{XX}(1-t) + U_{XX} U_{\Pi\Pi_D} (1-t) Z_1 - U_{GX} U_{X\Pi_D} - U^2_{X\Pi_D} (1-t)Z_1 + U_{GX} U_{X\Pi_D}(1-t)]\} / |J| \dots (4-25)$$

여기서 所得效果를 나타내는 $\frac{\partial G}{\partial \Pi_0}$ 는 式 (4-20)과 마찬가지로 陰의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frac{\partial G}{\partial t}$ 를 구하면 式 (4-26)과 같다.

$$\begin{aligned} \frac{\partial G}{\partial t} \Big|_{\pi_0 = \bar{\pi}_0} = & \{U_{n_D} Z_6 [U_{Gn_D} U_{XX} - U_{Gn_D} U_{Xn_D} (1-t) + U_{XX} U_{n_D n_D} \\ & (1-t) Z_2 - U_{GX} U_{Xn_D} - U_{Xn_D}^2 (1-t) Z_2 + U_{GX} U_{n_D n_D} \\ & (1-t) Z_1\} / |J| + \{U_{n_D} Z_6 [U_{n_D} U_{XX} Z_2 - U_{n_D} U_{Xn_D} \\ & (1-t) Z_2 + U_{n_D} U_{GX} - U_{n_D} U_{GX} - U_{n_D} U_{Gn_D} (1-t)]\} \\ & / |J| \dots\dots\dots (4-26) \end{aligned}$$

위의 式 (4-26)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begin{aligned} \frac{\partial G}{\partial t} \Big|_{\pi_0 = \bar{\pi}_0} = & Z_1 \frac{\partial G}{\partial \Pi_0} \Big|_{t = \bar{t}} + \{U_{n_D} Z_6 [U_{n_D} U_{XX} Z_2 - U_{n_D} U_{Xn_D} \\ & (1-t) Z_2 + U_{n_D} U_{GX} - U_{n_D} U_{Gn_D} (1-t)]\} / |J| \\ & \dots\dots\dots (4-27) \end{aligned}$$

여기서 代替效果를 나타내는 $\frac{\partial G}{\partial t}$ 는 式 (4-22)와는 달리 陽(+)의 값을 갖는다.

이상의 理論的 模型 중에서 어느 模型이 더 타당한가를 알기 위해 第4節에서는 實證分析을 실시하였다. 實證分析은 式 (4-8), (4-22), 그리고 (4-27) 중에서 어느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寄附金에 대한 租稅政策方向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만일 $\partial G / \partial t$ 가 0의 값을 갖는다면 利潤極大化 模型의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寄附金을 경상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세법상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partial G / \partial t$ 가 0의 값을 갖지 않는다면 利潤極大化 模型의 가설은 기각되며, 이 경우 $\partial G / \partial t$ 가 陽의 값을 갖든 陰의 값을 갖든 效用極大化 模型이 지지된다. 이처럼 經營者가 효용극대화의 동기에서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을 經常的인 支出로

간주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稅金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寄附金을 지출하게 되면 企業의 純利益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주주의 財產權을 경영자가 남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既存의 實證分析 結果

기업이 왜 寄附行爲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기업의 利潤極大化와 경영자의 效用極大化의 상황을 동시에 전제하고, 기업의 기부행위가 企業의 利潤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지 經營者의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지를 實證分析하였다.

Schwartz(1968)의 연구는 寄附金의 결정요인을 實證分析한 가장 앞선 연구 중의 하나이다. Schwartz는 기부의 가격⁶⁾, 광고, 현금흐름, 수익 등의 經濟變數가 寄附行爲⁷⁾에 미치는 영향을 實證分析하였다. 1936년부터 1961년까지의 산업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寄附의 價格과 正(+)의 相關關係가 있었으며 所得과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 또한 寄附行爲는 價格에 대해 탄력적이며, 所得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결과도 얻었다. Schwartz는 기부행위와 기부의 가격이 正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實證分析의 결과가 效用極大化 模型의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Schwartz는 寄附行爲가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질 경우 기부의 가격과 기부행위간에 負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6) 寄附行爲는 節稅效果가 있으므로 기부의 純費用(D_n)은 總費用(D_g)과는 다르며, $D_n = D_g(1-t_m)$ 으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t_m 은 기업이 지불하는 限界稅率이다. 총비용에 대한 순비용이 기부의 가격(P_d)을 결정하므로 寄附의 價格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_d = \frac{D_n}{D_g} = \frac{D_g(1-t_m)}{D_g} = 1-t_m$$

7) 寄附行爲를 나타내는 從屬變數는 기부금의 규모로 측정하였다.

Schwartz는 시계열분석 이외에도 1948년, 1959년, 1960년에 대해 횡단면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광고는 기부금과 正의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wartz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바로 寄附行爲가 利潤極大化의 동기에서 행해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광고는 利潤을 유발하기 위한 支出이며, 따라서 광고와 기부금간의 正의 상관관계는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Levy and Shatto(1978)는 寄附金의 수준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설정하고 이를 實證分析하였다. 첫번째 假說은 기부금의 수준이 기업의 純利益, 純投資額, 廣告費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두번째 假說은 기부금의 수준이 寄附의 費用, 즉 稅率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첫번째 假說에 대해 Levy and Shatto는 56개 산업에 대한 197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式을 추정하였다.

$$\log G = -3.092 + 0.0824 \log X_1 + 0.0265 \log X_2 + 0.0636 \log X_3,$$

(6.05) (2.07) (5.77)

$$\text{Adj } R^2 = 0.76$$

여기서 G는 寄附金의 規模, X_1 은 각 산업의 純投資額, X_2 는 각 산업의 純利益, X_3 는 각 산업의 廣告費를 나타낸다. 순투자액, 순이익, 그리고 광고비의 推定係數는 모두 正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Levy and Shatto는 廣告費의 추정계수가 正의 값을 갖는 것은 企業의 寄附行爲가 일종의 광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⁸⁾.

두번째 假說에 대해 Levy and Shatto는 1946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式을 추정하였다.

8)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써 廣告費와 寄附金 사이에 正의 相關關係가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G = -0.398 + 0.00726 X_1 + 0.00897 X_2 + 0.0259 X_3,$$

(2.224) (2.218) (3.379)

$$\text{Adj } R^2 = 0.948$$

여기서 G는 寄附金の 規模, X_1 은 平均稅率⁹⁾, X_2 는 稅前利益, X_3 는 配當額을 나타낸다. 平均稅率, 稅前利益, 그리고 配當額의 추정계수는 모두 正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Levy and Shatto는 企業의 寄附行爲는 정부의 租稅政策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稅率이 높아짐에 따라 寄附金の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Schwartz와 Levy and Shatto의 연구는 理論的 側面과 實證的 側面에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의 연구는 理論的 側面에서 企業의 寄附行爲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模型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들의 연구는 실증분석을 함에 있어서 企業資料 대신에 產業資料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는 미래의 寄附金 水準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租稅政策에 대한 寄附行爲의 敏感度를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왜 個別企業이 寄附行爲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답을 할 수 없었다.

Navarro(1988)는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式을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log G/S = & -3.48043 + 0.025802AD + 3.48380PCM \\ & (16.77) \quad (2.11) \quad (3.03) \\ & + 0.009165LIN - 0.000037FREE + 0.211598GOV \\ & (2.84) \quad (2.29) \quad (1.84) \\ & - 0.000927DER + 0.374644DIV + 0.020972MAN \\ & (1.67) \quad (1.76) \quad (0.12) \end{aligned}$$

9) Levy & Shatto는 限界稅率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平均稅率을 사용하였다.

$$\begin{array}{ccc}
 -0.000037\text{MANS} - 0.354570\text{FED} + 0.569101\text{TIT} \\
 (0.13) \qquad\qquad (1.01) \qquad\qquad (3.53)
 \end{array}$$

$$\text{Adj } R^2 = 0.223$$

여기서 G는 寄附金の 規模, AD는 광고비 /매출액, PCM은 가격-비용 마진, FED는 연방소득세 / 세전순이익을 나타낸다¹⁰⁾. Navarro는 理論的 模型에 의해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가설을 유도하였다. 즉, 기부금과 세율이 正 혹은 負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效用極大化 模型의 가설이 지지되며, 기부금과 세율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면 利潤極大化 模型의 가설이 지지된다는 것이다.

實證分析 結果에 의하면 FED의 추정계수는 陰(-)의 부호를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利潤極大化의 동기가 企業 寄附行爲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과는 寄附金を 보통의 事業費用으로 간주하여 세제상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4. 實證分析

가. 推定模型 및 變數의 說明

第2節의 理論的 模型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寄附金の 최적수준 G*는 다음과 같은 함수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G^* = f(\eta_c, \eta_p, t, C_g, \Pi_0, X) + \epsilon \dots\dots\dots (4-28)$$

그러나 대부분의 變數들이 관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實證分析에서는 代理變數(proxy variable)를 사용하여 다음의 方程式을 추정하였다.

1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Navarro(1988) 참조.

$$GS = \beta_0 + \beta_1 ADS + \beta_2 PCM + \beta_3 TXR + \beta_4 PERSEL \\ + \beta_5 DERATIO + \beta_6 DIVCHA + \beta_7 SALS + \varepsilon \dots (4-29)$$

實證分析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從屬變數인 寄附金과 說明變數인 稅率과의 관계이다. 만일 기부금과 세율간에 有意的인 相關關係가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이 성립하는 것이다. 반면 기부금과 세율간에 正의 相關關係가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 전통적인 經營者裁量模型下에서의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이 성립하는 것이며, 기부금과 세율간에 負의 相關關係가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 主人-代理人 問題의 一般論下에서의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이 성립하는 것이다.

從屬變數는 式 (4-5)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寄附金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寄附金을 賣出額으로 나누어 산출한 變數(GS)를 사용하였으며, 說明變數인 稅率 t의 代理變數로는 기업이 부담한 稅金을 稅前純利益으로 나누어 산출한 變數(TXR)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本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說明變數를 사용하였다.

우선 寄附金彈力性 η_c 의 代理變數로는 廣告費를 賣出額으로 나누어 산출한 變數(ADS)를 사용하였다. ADS는 企業이 마케팅 수단으로서 廣告에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내며, 이는 寄附金彈力性和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¹¹⁾. 式 (4-5)로부터 寄附金彈力性和 寄附金은 正의 상관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ADS와 GS도 正의 상관關係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需要의 價格彈力性 η_p 도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변할 변수가 필요하다. 式 (4-3)으로부터 經常利益을 賣出額으로 나누어 산출한 PCM¹²⁾이 需要의 價格彈力性의 逆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11) Navarro(1988), p. 78 참조.

12) 式 (4-3)의 좌변 $\frac{P-MC}{P}$ 는 Lerner index라고 한다. 限界費用(MC)은 일반적으로

때문에 이를 η 의 代理變數로 사용하였다. 式 (4-5)를 보면 需要의 價格彈力性과 寄附金은 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η 의 역수인 PCM과 GS는 正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豫想된다.

寄附金이 企業의 費用側面에 미치는 影響을 나타내는 變數인 C_0 의 代理變數로는 人件費를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 變數(PERSEL)를 사용하였다. 企業이 기부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비용 측면에서의 편익은 資本集約度가 높은 企業보다는 勞動集約度가 높은 企業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PERSEL을 C_0 의 代理變數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PERSEL이 큰 企業일수록 企業의 寄附行爲로부터 얻는 편익이 클 것이라는 事實을 의미하며, 따라서 GS와 PERSEL은 正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Π_0 의 代理變數로는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 중 하나가 負債를 資產으로 나누어 산출한 變數(DERATIO)이다. 企業은 自己資本보다는 他人資本을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더 선호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借入金比率이 높을수록 破産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經營者는 높은 借入金比率을 피하고 부분최적화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직업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裁量支出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GS와 DERATIO는 負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다른 하나는 當該年度 配當額에서 前年度 配當額을 차감하여 산출한 變數(DIVCHA)이다. 前년도와 비교하여 當해연도의 株式當配當額이 증가하면 經營者에 대한 株主의 압력이 약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經營者의 裁量支出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當해연도의 株式當配當額이 감

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MC는 平均費用(AC)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式 (4-3)의 좌변은 $\frac{P-AC}{P}$ 가 되며 분모와 분자에 생산량 Q를 곱하면 $\frac{P \cdot Q - AC \cdot Q}{P \cdot Q}$
 $= \frac{TR - TC}{TR} = \frac{\Pi}{TR}$ 가 된다. 여기서 TR은 總賣出額을 나타내며, TC는 總費用을 나타낸다. 따라서 PCM은 이와 같이 수정된 Lerner index를 관측하는 것이다.

소하면 經營者에 대한 株主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經營者의 裁量支出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S와 DIVCHA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을 제외한 其他 裁量支出을 나타내는 X의 代理變數로는 任員의 賃金を 賣出額으로 나누어 산출한 變數(SALS)를 사용하였다. X를 대변할 變數로는 經營자의 사무실 크기, 스태프의 수, 실제의 재량지출액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資料의 제한으로 인해 SALS를 사용하였다. 裁量支出이 많은 기업일수록 寄附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GS와 SALS는 正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利用資料 및 分析方法

本 研究에서는 分析期間을 1988년부터 199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分析對象은 製造業에 속하는 企業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업종에 속한 기업은 그 財務의 特性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實證分析에 사용한 자료는 韓國信用情報(株)의 企業財務諸表 SAS Dataset이다. 이 자료는 上場法人, 外監法人, 그리고 登錄法人을 망라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각 항목들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자료는 推定模型의 분석에 필요한 變數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表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만 5,110개의 기업 중에서 推定模型의 분석에 필요한 變數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6,505개의 기업만을 分析對象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1988년부터 1996년까지의 자료를 統合(pooling)하여 橫斷面(cross section)資料로 이용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基本統計値는 <表 4-2>에 요약되어 있으며, 說明變數들

〈表 4-1〉 年度別 分析對象 企業數

(單位：個，%)

	韓情 Dataset (A)	標 本 (B)	B/A
1988	4,598	585	12.7
1989	5,038	649	12.9
1990	5,845	784	13.4
1991	6,860	758	11.0
1992	6,955	745	10.7
1993	6,860	731	10.7
1994	7,328	793	10.8
1995	6,516	793	12.2
1996	5,110	667	13.1
합 계	55,110	6,505	11.8

간에는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問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¹³⁾.

實證分析에서는 通常的 最小自乘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
용하여 式 (4-29)를 추정하였다. 또한 標本을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推定係數를 갖는지도 살
펴보았다.

13) 說明變數들간에 多重共線性 問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Pearson 相關係數
를 관찰하였다. 그 중 PCM과 SALS간의 相關係數가 0.39142로 가장 컸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인 0.8 내지 0.9에 미달하는 수치였다. 다음으로는 Belsley, Kuh and
Welsch(1980)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메트릭스(X'X) 固有根
(characteristic roots)의 '最大값/最小값 比率'(condition number) 중에서 가장
큰 수치는 9.76206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수치였다.

〈表 4-2〉 分析變數의 基礎統計值

變 數	全 體			上 場 法 人			非 上 場 法 人		
	標本數	平均	標準偏差	標本數	平均	標準偏差	標本數	平均	標準偏差
GS	6,505	0.003116	0.009641	2,974	0.002740	0.005760	3,531	0.003433	0.011962
ADS	6,505	0.011277	0.024794	2,974	0.015574	0.029006	3,531	0.007658	0.019884
PCM	6,505	0.065806	0.093250	2,974	0.043540	0.046602	3,531	0.084560	0.115857
TXR	6,505	0.326708	0.315917	2,974	0.321623	0.212208	3,531	0.330991	0.381995
PERSEL	6,505	0.422329	0.139458	2,974	0.380142	0.124163	3,531	0.457861	0.141732
DERATIO	6,505	2.531433	2.575550	2,974	2.204291	1.571149	3,531	2.806969	3.158637
DIVCHA	6,505	162729	1881861	2,974	229442	2096016	3,531	106540	1678701
SALS	6,505	0.007376	0.013963	2,974	0.004047	0.005673	3,531	0.010180	0.017746

다. 實證分析 結果

式 (4-29)의 推定結果는 〈表 4-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수정결정계수 R^2 는 0.1616으로 模型의 설명력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F값은 180.09 ($> F_{0.01(7,6497)} = 2.64$)로서 係數 全般의 有意性を 보여준다.

각 變數에 대한 推定結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寄附金彈力性的의 代理變數인 ADS와 需要의 價格彈力性的의 代理變數인 PCM은 예상대로 正의 推定係數를 가졌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經營者의 其他 裁量支出을 代변하는 SALS의 推定係數도 예상대로 正의 부호를 가졌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하였다.

Π_0 의 代理變數 중의 하나인 DIVCHA는 예상대로 正의 推定係數를 가졌으며, 이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함을 나타내었다. 반면 Π_0 의 또 다른 代理變數인 DERATIO의 推定係數는 예상과 달리 正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有意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表 4-3〉 企業 寄附行爲의 動機에 관한 推定結果

說明變數	全 體	上場法人	非上場法人
INTERCEPT	-0.00085 (-2.06) **	-0.00052 (-1.32)	-0.00159 (-2.16) **
ADS	0.04089 (8.93) ***	0.05564 (16.19) ***	0.00925 (0.95)
PCM	0.02899 (22.24) ***	0.03468 (15.69) ***	0.02919 (16.48) ***
TXR	0.00148 (4.26) ***	0.00124 (2.73) ***	0.00149 (3.08) ***
PERSEL	0.00028 (0.34)	0.00047 (0.59)	0.00088 (0.64)
DERATIO	0.00003124 (0.72)	-0.00000034 (-0.01)	0.00008124 (1.36)
DIVCHA	1.065198E-10 (1.82) *	7.749609E-11 (1.70) *	1.168431E-10 (1.06)
SALS	0.12179 (14.09) ***	0.07128 (4.08) ***	0.13286 (11.66) ***
N	6,505	2,974	3,531
Adj R ²	0.1616	0.1886	0.1622
F	180.09	99.70	98.65

註: 1. ()안은 t-value임.

2. ***은 1%, **은 5%, *은10% 수준(양측검증)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결과는 借入金 比率이 높을수록 파산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效用을 極大化하려는 經營者는 높은 借入金 比率을 피하고 부분최적화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假說을 기각하는 것이다.

C₀의 代理變數인 PERSEL의 推定係數는 예상대로 正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이 寄附行爲를 할 때 비용측면에서 나타나는 편익이 資本集約度가 높은 기업보다는 勞動集約度가 높은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假說을 기각하는 것이다.

本 研究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變數는 TXR인데, 이의 推定係數는 正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 대신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經營者裁量模型으로부터 도출된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美國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Navarro(1988)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Navarro의 연구결과는 이 推定係數가 0(零)이 아니라는 歸無假說을 기각하였으며, 따라서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뒷받침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기업을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으로 나누어 式(4-29)를 추정해 보았다.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수정결정계수 R^2 는 각각 0.1886과 0.162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반면 F값은 각각 99.70 ($> F_{0.01(7,2966)} = 2.64$)과 98.65 ($> F_{0.01(7,3523)} = 2.64$)로서 係數 全般의 有意性을 보여준다.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推定係數가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Chow test를 해 보았다. Chow test를 위한 F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frac{(SSE - SSE_1 - SSE_2)/K}{(SSE_1 + SSE_2)/(T - 2K)} = 6.65 > F_{0.01(8,6489)} = 2.51$$

이와 같은 결과는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推定係數가 같다는 歸無假說을 기각하는 것이다. 두 그룹의 推定係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ADS의 推定係數이다. 上場法人의 경우 ADS의 推定係數는 正의 부호를 가지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非上場法人의 경우에는 ADS의 推定係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DIVCHA의 推定係數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上場法人의 경우 DIVCHA의 추정계수가 正의 부호를 가지며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非上場法人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DERATIO의 경우 통계적으로 有意하지는 않았으나,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추정계수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本 研究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TXR의 推定係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TXR의 推定係數는 각각 0.00124와 0.00149였으며, 각각 1%의 有意水準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 대신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뒷받침하는 本 論文의 研究結果는 전체 기업을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5. 政策的 示唆點

本章에서는 Navarro(1988)의 研究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企業의 寄附行爲가 企業의 利潤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經營者의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實證分析하였다. 本 研究의 實證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本 研究에서는 기부금과 세율간에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推定係數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 대신에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인 經營者裁量 模型으로부터 도출된 效用極大化 模型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美國의 企業들을 대상으로 한 Navarro의 研究는 기부금과 세율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歸無假說을 기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채택하였다.

이상의 實證分析 結果로부터 다음과 같은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寄附金에 대한 損金算入限度額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만을 損金算入限度額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금액의 100%까지를 損金算入限度額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 論文의 실증분석 결과는 企業이 經營者의 效用極大化의 동기에서 寄附行爲를 한다는 假說을 뒷받침하고 있

으므로 寄附金을 經常的인 支出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損金算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자가 재량으로 寄附金을 지출하는 것은 바로 純利益의 감소로 연결되며, 이는 주주의 財產權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寄附行爲는 企業이 아닌 個人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寄附金에 대한 損金算入限度를 축소하여 기업의 寄附行爲를 억제하는 동시에, 個人의 경우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줌으로써 寄附行爲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利潤은 주주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株主는 개인 입장에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寄附金의 募集方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寄附金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寄附金을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企業의 經營成果가 나빠지는 것이므로 公權力이 직접·간접으로 개입되어 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상의 研究結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限界點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론적 모형의 대부분의 變數들은 관측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實證分析에서는 代理變數를 사용하여 方程式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限界點이 있다. 둘째, 本 論文의 推定模型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총 5만 5,110개의 기업 중에서 6,505개의 기업만을 分析對象으로 하였다는 限界點이 있다.

V. 우리나라의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

1. 寄附金の 範圍

가. 寄附金の 要件

현행 法人稅法은 寄附金の 定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法人稅法施行令 第40條에서 그 範圍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인이 法人稅法 第46條 第1項에 규정된 特殊關係¹⁾가 없는 자에게 法人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財産的 贈與의 가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둘째, 법인이 法人稅法 第46條 第1項에 규정된 特殊關係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讓渡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買入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1) 特殊關係가 있는 者라 함은 다음의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 ① 出資者(소액주주를 제외함)와 그 親族
- ② 법인의 任員·使用人 또는 출자자의 使用人(출자자가 營利法人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非營利法人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金錢, 其他 資産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親族
- ③ 출자자 또는 ① 및 ②에 계기하는 자가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の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法人
- ④ ③ 또는 ⑥에 계기하는 자가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の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法人
- ⑤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法人이나 個人
- ⑥ ① 및 ②에 계기하는 자가 理事의 과반수이거나 出捐金(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設立者로 되어 있는 非營利法人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寄附金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正常價額은 時價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時價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라도 讓渡價額이나 買入價額이 정상가액의 범위내이면 寄附金으로 볼 수 없다. 時價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에 의하며, 감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61條 내지 第64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非上場株式은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63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寄附金의 범위로부터 寄附金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寄附金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特殊關係가 있는 자를 제외한 他人이어야 하며, 이때 타인은 個人뿐만 아니라 法人이라도 무방하다. 特殊關係者에게 무상으로 실시한 금전적 증여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法人稅法 第20條의 不當行爲計算의 否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중 使用人에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 給與 또는 福利厚生費로 처리한다.

둘째, 寄附金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한다.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계여부는 다음과 같이 寄附金과 接待費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은 接待費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는 거래실태별로 구분된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이면 接待費로 간주되고,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품이면 寄附金으로 간주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寄附金으로 간주한다.

셋째, 寄附金은 무상으로 지출되는 財産的 贈與의 가액이어야 한다.

寄附金은 지출에 대하여 反對給付가 없어야 하며 財産의 價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대급부가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寄附金으로 볼 수 없다.

나. 寄附金 損金算入規制의 意義

寄附金은 法人의 純資産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損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法人稅法에서는 寄附金의 성격에 따라 損金算入의 한도를 따로 정해 놓고 그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損金算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寄附金은 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법인의 收益에 대응되는 損金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寄附金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무상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法人의 수익창출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둘째, 法人이 지출한 모든 寄附金을 전부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경우 기업의 租稅負擔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國庫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즉, 寄附金의 지출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 租稅債權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寄附金을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셋째, 寄附金을 법인이 임의대로 지출할 경우 사회적인 不健全 資金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企業의 利益이 부당하게 社外로 유출되면 과세의 회피와 富의 不公正配分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法人稅法에서는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損金算入의 한도를 따로 정해 놓고 있으며, 移越缺損金이 있는 기업이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의 소득금액에서 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결손기업이 寄附金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損金算入의 範圍에 따라 기부금은 全額損金算入寄附

金, 指定寄附金, 非指定寄附金の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는 이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全額損金算入寄附金

가. 全額損金算入寄附金の 範圍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대한 寄附金으로서 租稅와 다름없을 정도로 公益性이 강한 기부금이다.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品の 價額으로서 國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寄附金品募集規制法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法人稅法 第18條 第3項 第1號)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상으로 金품을 寄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寄贈하는 金品の 價額에는 法人이 개인 또는 다른 法人에게 財産을 寄贈하고 受贈者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贈한 金品の 價額이 포함된다.

- 2) 國防獻金과 恤兵金(法人稅法 第18條 第3項 第2號)

國防獻金 및 國군장병을 위한 慰問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郷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대해 직접 지출하거나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機關 또는 團體를 통하여 지출하는 寄附金도 이에 해당한다.

- 3) 天災·地變으로 생긴 罹災民을 위한 救護金品の 價額(法人稅法 第18條 第3項 第3號)

罹災民을 위한 救護品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罹災復舊工事を 시공하는 法人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工事代金

相當額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4) 租稅減免規制法上的 寄附金(租稅減免規制法 第61條, 第62條)

法人稅法 이외에 租稅減免規制法에서도 全額 損金算入에 해당하는 寄附金を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內國人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公共法人 중 다음의 법인에 지급한 出捐金과 委託研究費는 전액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다.

- ① 特定研究機關育成法の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 포함)
- ② 工業 및 에너지 技術 基盤造成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 기술연구원 및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둘째, 內國人이 다음의 寄附金を 지출한 경우에도 그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다.

- ①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② 私立學校法에 의한 사립학교, 技能大學法에 의한 기능대학, 國立大學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大學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③ 社內勤勞福祉基金法の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④ 獨立記念館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⑤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⑥ 韓國國際交流財團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⑦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⑧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셋째, 내국인이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政黨에 기부한 정치자금도 전액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다. 이 경우 所得金額의 계산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후의 所得金額의 범위 안에서 寄附金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課稅年度의 소득금액에서 寄附金을 공제할 수 있다.

나. 全額損金算入寄附金の 損金算入限度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寄附金이다. 法人稅法 第18條 第3項에서는 기부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에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이를 全額 損金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寄附金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부금 전액이 損金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當該 事業年度 所得金額에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3. 指定寄附金

가. 指定寄附金の 範圍

指定寄附金은 기부금 중에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의 公益性寄附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 한도 내의 금액만을 損金算入하는 寄附金이다. 法人稅法施行令 第42條에서는 지정기부금을 크

계 두 부류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한 부류는 <表 5-1>의 非營利法人(團體를 포함함)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固有 目的事業費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며, 또 다른 부류는 <表 5-2>에서 열거하는 寄附金이다.

<表 5-1> 指定寄附金の 範圍 (1)

指 定 寄 附 金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6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제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1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13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14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15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6	어린이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7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更生보호공단
19	대한민국제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제향경우회

〈表 5-1〉의 계속

指 定 寄 附 金	
20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2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2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23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24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25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6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8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29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31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
3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3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4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35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3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
3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38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3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40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41	위의 12 내지 40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表 5-2〉 指定寄附金の 範圍 (2)

	指 定 寄 附 金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공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6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7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당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나. 指定寄附金の 損金算入限度

지정기부금은 法人稅法이 규정하는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損金不算入으로 처리된다. 指定寄附金の 손금산입한도액은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범위액과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범위액의 합계로 이를 算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한도액 = 소득금액 기준 범위액 + 자기자본 기준 범위액

1) 所得金額 基準 範圍額

소득금액 기준 범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에서 全額損金算入 寄附金과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또는 課稅標準의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text{소득금액 기준 범위액} = (\text{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text{전액손금산입 기부금} - \text{이월결손금}) \times 7\%$$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서 移越益金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2) 自己資本 基準 範圍額

자기자본 기준 범위액은 당해 事業年度 終了日 현재의 자기자본(5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다.

$$\text{자기자본 기준 범위액} = \text{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times 2\%$$

여기서 自己資本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貸借對照表上에 나타난 資産의 합계액에서 負債²⁾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法人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非營利內國法人의 자기자본은 수익사업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2) 充當金을 포함하고 未支給法人稅를 제외한다.

4. 非指定寄附金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寄附金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이다. 非指定寄附金은 企業會計上으로는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비용처리되었다 하더라도 稅法上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전액 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寄附金の 計算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現金主義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법인이 기부금을 假支給金 또는 未支給金 등으로 계상함으로써 각 事業年度의 所得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기부금을 假支給金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寄附金으로 하고 그 후의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이를 寄附金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寄附金を 未支給金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할 때까지 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寄附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寄附金の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寄附金이 지급된 것으로 하며, 寄附金の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寄附金を 지출한 모든 法人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寄附金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명세서는 法人稅法施行規則 別紙 第6-13號 書式을 사용한다.

한편 寄附金を 금전 이외의 資産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時價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全額損金算入寄附金の 경우는 帳簿價額으로 한다.

VI. 主要外國의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

1. 美國

가. 寄附金の 範圍

美國의 內國歲入法(Internal Revenue Code : 이하에서는 ‘稅法’이라고 함) 第170條에서는 慈善寄附金(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첫째, 美國·州·美國의 屬領·콜롬비아 특별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公共目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美國이나 美國의 屬領 內에서 또는 美國·州·美國의 屬領·콜롬비아 특별구 등의 법률하에서 설립된 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국내외의 아마추어 스포츠경기의 육성, 아동·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법인, 신탁, 공동기금, 기금, 재단 등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활동으로부터 얻은 순이익은 民間 出資者 또는 個人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法律 制定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함으로써 非課稅團體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아야 하며, 관공서에서 일하게 될 후보자를 위해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셋째, 美國이나 美國의 屬領 內에서 조직된 재향군인회 지부 또는 조직, 그 보조단체나 조합, 신탁, 재단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들

1) 稅法 第170條(c).

활동으로부터 얻은 순이익은 民間出資者 또는 個人的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형태로 운영되는 國內控除組合 또는 協會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 아동·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회원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소유·운영되는 묘지회사 또는 오로지 매장 목적으로 공인된 기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은 營利를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이들 조직의 純利益은 民間出資者 또는 個人的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稅法 第501條는 非課稅團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非課稅團體에 대한 寄附金이 모두 자선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慈善寄附金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을 수취하는 조직은 대개 종교·자선단체 등으로서 美國 등에서 설립되었거나 美國의 法律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지만, 이는 稅法 第501條(c)(3)에 의해 종교·자선단체 등이 非課稅團體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며 따라서 慈善寄附金을 수취하는 조직보다도 非課稅團體가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의 國稅廳은 非課稅團體와 그에 대한 기부가 慈善寄附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表 6-1>과 같다.

이상과 같은 慈善寄附金 이외에도 기타의 기부금, 즉 事業關聯寄附金이 있다. 이 기부금은 稅法 第170條에 기술된 것 이외의 조직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① 納稅者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 ② 기타 별도의 규정에 의해 損金으로서의 공제가 부인되지 않는 寄附金額에 부합하는 정당한 反對給付가 기대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²⁾. 예를 들면 旅客運輸法人이 자사의 버스노선이 있는 어느 市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조직(세법 제170조에 언급되지 않은)에 대해 寄附를 할 경우는 총

2) 稅法施行規則 § 1.162-15(b).

회 개최에 의해 다수인이 당해 법인의 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運賃收入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損金으로 공제할 수 있다.

〈表 6-1〉 非課稅團體와 慈善寄附金の 關係

關聯 條文	非課稅團體	慈善寄附金 該當與否
세법 제501조(c)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공익목적 사용에 한함)
	○자산의 소유권만 가진 법인	×
	○자선단체·종교법인 등	○
	○시민단체 등	×
	○노동단체 등	×
	○상공회의소 등	×
	○사교·오락클럽	×
	○공제조합	○(자선·종교목적 사용에 한함)
	○임의의 종업원보조단체	×
	○지부 형태의 공제조합	○
	○교원의 퇴직기금협회	×
	○박애적인 생명보험협회 등	×
	○묘지회사 등	○
	○주식자본이 없는 신용조합	×
	○소규모 보험회사	×
○재향군인회 지부 등	○	
세법 제501조(d)	○종교 또는 사도조직	×
세법 제501조(e)	○협동병원의 보조조직	○
세법 제501조(f)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보조조직	○

나. 寄附金の 損金算入

1) 慈善寄附金の 損金算入

美國의 경우 일본에서와 같이 全額 損金算入이 가능한 指定寄附金制度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事業關聯寄附金制度를 두고 이에 대해서도 慈善寄附金과 동일하게 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損金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寄附金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주·콜롬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의 속령 등에 대해 오로지 公共目的을 위해 출연된 寄附金이어야 한다.

둘째, 미국 또는 그 속령 내에서 미국·주·콜롬비아 특별구 또는 속령의 法務에 의거하여 창설되거나 조직된 것으로서 오로지 종교·자선·과학·문학 또는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경기의 진흥을 위하여, 또는 아동·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法人·信託·共同基金·財團으로서 그 순이익의 어떠한 부분도 주주 또는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慈善團體에 대해 제공한 인적용역의 가치를 寄附金으로서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적용역 제공시에 발생한 운임·교통비·전화요금·시설비 등의 經費는 공제할 수 있다.

셋째, 오로지 그 構成員을 위하여 소유·운영되는 묘지회사 또는 오로지 매장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法人格을 부여받고 주주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넷째, 미국 또는 그 속령 내에서 조직된 在鄉軍人會 支部 또는 그 下部組織으로서 그 순이익의 어떠한 부분도 株主 또는 個人의 利益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法人이 慈善寄附金を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지출된 과세연도에 損金으로서 공제한다. 그러나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法人의 경우 課稅年度 終了日까지 이사회가 慈善寄附金の 지분을 승인하고 그 寄附金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3개월째의 15일까지 지불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 법인은 그 慈善寄附金の 전액 또는 일부를 당해 課稅年度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³⁾.

法人이 지출한 寄附金 중에서 損金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課稅所得(taxable income)의 10% 이하

3) 稅法 第170條(a)(2).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① 當該年度 寄附金
- ② 當該年度の 配當金 控除
- ③ 稅法 第172條에서 규정하는 純營業損失(net operating loss)의 소급이월분
- ④ 稅法 第1212條(b)(1)에서 규정하는 資本損失의 당해연도 소급이월분

또한 당해연도의 控除限度額 超過分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으나, 차기이월에서도 그 해 課稅所得의 10%에서 당해연도의 寄附金 控除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法人이 지출한 慈善寄附金을 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管轄稅務署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기부금 지불처의 명칭·금액·지불일을 각각의 기부금별로 명기하여야 한다⁴⁾. 또한 寄附가 현금 이외의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종류, 기부 당시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격 및 결정방법, 기부자산의 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조항 등도 명기해야 한다⁵⁾. 이때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이 支拂時期의 特例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理事會 決議案의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⁶⁾.

2) 資產 또는 用役을 寄附한 경우

법인이 금전이 아닌 資產을 기부하였을 때 損金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자산이 通常所得資產(ordinary income property)인가, 讓渡資產인가, 또는 양자가 결합된 자산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通常所得資產에는 재고품·예술작품·주식 및 기타의 자본자산이 포

4) 稅法施行規則 § 1.170A-13(a)(2)(ii).

5) 稅法施行規則 § 1.170A-13(b)(2)(ii).

6) 稅法施行規則 § 1.170A-11(b)(2).

합된다. 통상소득자산의 寄附金控除額은 그 자산이 매각된다고 할 때 통상소득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公正市場價格이다. 그러나 질병, 빈곤 및 아동보호 등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公共慈善團體 및 個人慈善團體에 대해 행한 통상소득자산의 寄附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되고, 이때 法人은 기부된 資産의 取得價額에 그 자산가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단, 損金算入은 당해 資産取得價額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讓渡資産에는 기부일에 당해 자산을 공정한 市場價格으로 매각했다고 하면 長期讓渡所得이 실현될 수 있었을 資本資産이 포함된다. 가격이 등귀한 양도자산의 기부에 관한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으로 免稅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有形動産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 자산이 공정한 市場價格으로 매각되었다면 발생하였을 장기 양도소득의 40%(寄附者가 法人일 경우 28/46)를 차감한 그 자산의 공정한 市場價格이 공제액이 된다. 最高 控除限度額 50%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재단에 대한 讓渡資産의 기부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위의 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最高 控除限度額 50%의 적용을 받는 양도자산의 기부에 대한 控除限度額은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30%이다.

結合資産, 즉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매각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이득의 일부가 通常의인 所得으로 취급되고 다른 일부가 讓渡所得으로 취급되는 자산의 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산이 행해진다. 우선 공정한 市場價格으로 매각되었다면 발생되었을 通常所得을 공정한 시장가격에서 차감한 후 그 殘額은 讓渡所得으로 취급한다.

用役(services)을 기부한 경우에는 慈善寄附金으로서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기부의 지불처가 慈善寄附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非課稅團體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로서 변제되지 않는 것은 慈善寄附金으로서 공제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복(uniform)을 기부로서의 용역제공시에 착용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공제된다. 또한 寄附로서의 用役提供을 위한 교통비·식대·호텔료 등도 그 금액이 합리적이면 공제가 인정된다⁷⁾.

2. 日本⁸⁾

가. 寄附金の 範圍

1) 寄附金の 意義

稅法上 寄附金이란 기부금, 각출금, 위문금,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기타의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贈與하거나 無償供與를 한 경우의 價額을 말한다. 다만 급여, 광고선전비,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것은 寄附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⁹⁾.

이 경우 經濟的인 利益의 無償供與라는 것은 채무의 면제, 채무의 무상인수, 금전의 무이자대부, 또는 기타 용역의 무상제공 등을 의미한다. 한편, 법인이 資產을 양도하거나 經濟的인 利益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공여의 대가로서 얻는 금액이 당해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가격, 즉 時價에 비해 낮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을 실질적으로 贈與 또는 無償供與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寄附金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低廉讓渡 등이라고 칭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經濟的인 利益의 無償供與나 低廉讓渡 등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손비로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으로는 일

7) 稅法施行規則 §1.170A-1(g).

8) 本節은 주로 渡邊淑夫(1994)를 참조함.

9) 法人稅法 第37條 第6項.

10) 法人稅法 第37條 第7項.

는 일단 당해 경제적 이익의 가격 또는 저렴양도한 부분의 금액에 대한 收益의 실현이 가능하고 동시에 이것을 상대방에게 공여함에 따른 損失이 발생하므로 이를 寄附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증여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광고선전비나 견본품비, 교제비, 복리후생비 등을 寄附金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支出이 모두 사업수행상 직접 필요한 費用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2) 寄附金의 具體的 判定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稅法上의 寄附金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른 법인의 寄附金 支出은 그 판별에 있어 별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존재하고 더구나 寄附金이 아닌 지출이 寄附金의 형식을 취하여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가) 親族會社의 寄附金

친족회사가 그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寄附金을 회사의 經費로 지출하는 경우 그 支出金은 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임원 등에 대해 經濟的 利益을 공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法人稅 計算上으로는 任員 등에 대한 給與로서 부인되는 것이다¹¹⁾. 이때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부금인지의 여부는 支出의 動機, 相對方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나) 資產의 取得價額으로 간주되는 寄附金

지방공공단체가 공장유치 등의 목적으로 기업에 土地나 其他 固定資產을 불하하는 경우 표면적인 불하가격 이외에 당해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寄附金이나 負擔金의 명목으로 一定金額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건이 되는 경우가 적

11) 法人稅法基本通牒 9-4-2의 2.

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의 형식은 寄附金이라 하여도 실제로 불하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으로서 損金算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하를 받은 資産의 取得價額에 산입하여야 한다¹²⁾. 또한 주택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정비한 도로·공원·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地方公共團體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부가 명목적인 것이고 당해 公共施設의 정비가 오로지 住宅造成 등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마찬가지로 기부금이 아닌 宅地の 取得價額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移延資産으로 간주되는 寄附金

법인이 市·町·村 등 地方公共團體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부의 목적이 當該 寄附金에 의해 건설되는 시설을 장래에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稅法上 寄附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¹³⁾.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의 형식이 寄附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權利金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移延資産으로서 자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이 효과를 미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 減價償却해야 하는 것이다¹⁴⁾. 또한 제조업체 등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약점 등에 광고선전용 자산을 贈與 또는 低廉讓渡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부금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移延資産으로서 減價償却하여야 한다¹⁵⁾.

라) 母·子會社間 寄附金

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無利子貸付, 資産의 低廉讓渡, 債務引受 등을 행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사업수행상 당연한 행위이며 단순한 贈與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母·子會社間 寄附金은 사

12) 法人稅法基本通牒 7-3-3.

13) 法人稅法 第37條 3-1.

14) 法人稅法 第32條.

15) 法人稅法施行令 14-1-9-4 및 法人稅法基本通牒 8-1-8.

업수행상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日本 國稅廳의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자회사의 실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견해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日本 國稅廳에서는 1980년 法人稅法基本通牒의 개정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取扱通牒을 공표하여 이러한 괴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먼저 법인이 子會社 등의 解散, 經營權의 讓渡 등에 따라 당해 자회사 등을 위해 채무의 인수 및 기타 손실을 부담하거나 당해 자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부담 또는 포기가 차후에 더 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사회통념상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負擔 또는 拋棄를 함으로써 생긴 損失額은 寄附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¹⁶⁾. 또한 法人이 子會社에 대해 금전을 無利子 또는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低利로 대부한 경우에도 그 대부가 업적이 부진한 자회사 등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행한 자산의 대부로서 합리적인 再建計劃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대부가 정상적인 去來條件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¹⁷⁾.

마) 公益法人 등의 業務와 有關한 寄附金

公益法人 등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法人稅를 納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收益事業을 통해 지출된 寄附金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公益法人 등의 경우에는 收益事業에 의해 획득된 자금을 公益事業(非收益事業)에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收益事業活動을 통해 지출한 자산 중에서 公益事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寄附金으로 인정하여 損金算入함과 동시에 限度計算을 행하고 있다¹⁸⁾.

16) 法人稅法基本通牒 9-4-1.

17) 法人稅法基本通牒 9-4-2.

이러한 규정은 公益法人 등에 있어서 收益事業部門과 公益事業部門을 마치 각각 별개의 독립된 法人으로 간주하고 전자가 후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稅法上 寄附金으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公益法人 등에 있어서 寄附金の 損金算入限度額은 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所得金額의 27%가 아니라 50%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公益事業을 위해 사용되어진 收益事業의 소득에 관해서는 대폭적인 과세의 경감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寄附金の 損金算入

寄附金の 損金算入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는 제2차대전중인 1942년의 세제개편에 따른 臨時租稅特別措置法の 일부 개정법(法律 第56號)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寄附金の 損金算入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純資産效果에 착안하여 전액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었다. 그 후 1946년 세제개편시의 租稅特別措置法, 1947년 법인세법 본법에의 도입 등에 의해 오늘날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1961년의 세제개편시 시험연구법인¹⁸⁾ 등에 대한 寄附金特別의 제정 및 1965년 법인세법 전문개정시 종래 政令事項이던 것을 法律事項으로 격상시키는 조치와 더불어 寄附金の 의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²⁰⁾.

法人이 寄附金を 지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損金에 산입되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 중 內國法人의 資本 등의 金額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損金算入限度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寄附金이라 하더라도

18) 法人稅法 第37條 第4項.

19) 1988년의 세제개편시 特定公益增進法人으로 개정하였다.

20) 渡邊淑夫, 『法人稅法』, 中央經濟社, 1994, p. 383.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대한 공적인 기부금 및 특히 공익성이 강한 것으로서 대장대신이 지정한 寄附金에 대하여는 상기의 損金算入限度額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寄附金 全額이 損金에 산입된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寄附金에 대하여 확정된 결산에서 利益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한 經理(利益積立金額을 그 지출한 寄附金에 충당하는 경리를 포함)를 한때에는 그 利益處分 등에 의한 寄附金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一般寄附金の 損金算入

一般寄附金, 즉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 등에 대한 기부금과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출한 법인의 자본금액 및 소득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損金算入限度額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경우 損金算入限度額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 普通法人, 協同組合 및 人格이 없는 社團 등(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① 기말의 資本 등의 金額 × (당기의 월수/12) × (2.5/1,000)

② 당기의 所得金額 × (2.5/100)

損金算入限度額 = (① + ②) × (1/2)

나) 普通法人, 協同組合 및 人格이 없는 社團 등(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이 없는 경우)

損金算入限度額 = 당기의 所得金額 × (2.5/100)

다) 公益法人 등

① 私立學校法에 의한 學校法人(전수학교법인 포함) 또는 社會福祉事業法의 규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의 경우

損金算入限度額 = 당기의 所得金額 × (50/100) 또는 연 200 만엔 중 많은 금액

② 기타 공익법인 등의 收益事業

損金算入限度額 = 당기의 所得金額 × (27/100)

라) 長期給付를 행하는 控除組合 등에 관한 特則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및 동 연합회, 지방공무원공제조합, 市·町·村 직원공제조합 및 동 연합회 등과 같이 退職給付나 그 밖의 長期給付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控除組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즉, 장기급부의 사업(非收益事業)을 수행함에 있어 收益事業에 대하여 융통해 준 자금이 年利 5% 이내의 이자를 붙인 경우 그 利子是 위의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損金算入限度額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서 인정된다.

2)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 및 指定寄附金에 관한 特則

法人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출한 寄附金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부금, 즉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 등에 대한 寄附金 및 公益性이 강한 것으로서 대장대신이 지정한 寄附金에 대해서는 一般寄附金과 구별하여 損金算入限度額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무국 포함)에 대한 寄附金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한 자가 그 기부에 의하여 건설된 설비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특별한 이익을 향유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寄附金이 아닌 移延資産으로 減價償却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등에 수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즉 국공립학교 등의 시설확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後援會 등에 지출한 寄附金도 그 목적시설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국가 등에 귀속된다면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으로 본다. 이에 반해 일본국유철도·일본도로공단·일본개발은행 등과 같이 全額 政府出資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 등에 대한 寄附金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대장대신이 지정한 寄附金이란 民法 第344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행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寄

附金으로 ① 널리 일반에게 모집될 것, ② 教育 또는 科學의 진흥, 文化의 향상, 社會福祉에의 공헌, 其他 公益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되는 것이 확실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청에 의해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²¹⁾.

法人이 지출한 寄附金에 대해 이상과 같은 特則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確定申告書에 寄附金額을 명시하고 明細書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損金算入되는 금액은 법인이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다만 當該 寄附金の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확정신고서상의 기재 또는 명세서의 첨부가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管轄 稅務署長에 의해 그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損金算入이 허용될 수 있다²²⁾.

3)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한 寄附金の 特則

法人(公益法人 등은 제외)이 지출한 寄附金 중에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特定公益增進法人의 주된 목적이 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寄附金은 損金算入이 가능하다.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한 寄附金の 합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一般寄附金の 損金算入限度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限度額으로 하여 손금산입된다. 法人이 지출한 寄附金에 대하여 이와 같은 特則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서상의 기재 및 명세서의 첨부가 필요한 것은 물론 特定公益增進法人임을 증명하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公益法人 등이 特定公益增進法人일 경우 이들에 대해 지출한 寄附金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公益法人 등에 대한 寄附金の 損金算入限度額이 당기 소득금액의 27% 또는 50%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特定公益增進法人은 公共法人, 公益法人 및 별도의

21) 當該 法人의 設立을 목적으로 출연한 寄附金 및 그 밖에 설립 전에 출연한 寄附金을 포함한다(法人稅法 第37條 3-2).

22) 法人稅法 第37條 第8, 9項.

法律에 의해 설립된 法人으로서 교육·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법인으로 法人稅法施行令 第77條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²³⁾.

〈表 6-2〉 日本 寄附金稅制의 概要

		公益성이 높은 寄附金			一般寄附金 (좌측에 기재된 것 이외의 寄附金)
		國家 또는 地方公共 團體에 대한 寄附金	指定寄附金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한 寄附金	
概要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대장대신이 지정된 것 · 널리 일반에게 모집될 것 ·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할 것	-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령에 정해진 단체에 대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주된 목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것)	
稅制上의 取扱	法人稅	지출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아래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자본 등의 금액 × 0.0025 + 소득금액 × 0.025) / 2	아래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자본 등의 금액 × 0.0025 + 소득금액 × 0.025) / 2
	所得稅	당해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 1만원 (총소득의 25% 상당액 한도)			좌측에 기재된 기부금 이외에는 과세소득의 계산상 공제되지 않음

資料 : 貝塚啓明·金本良嗣(1994), p. 147.

23) 法人稅法施行令 第77條는 다음과 같이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종합연구개발기구, 이화학연구소, 신기술사업단, 일본원자력연구소,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우주개발사업단, 해양과학기술센터, 국제교류기금,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 방송대학학원, 일본학술진흥회, 일

3. 政策的 示唆點

우리나라, 美國 그리고 日本의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는 <表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企業寄附金 關聯 租稅制度는 美國의 경우 그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日本과 우리나라는 美國보다 복잡한 편이다. 각국의 制度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寄附金の 範圍은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指定寄附金과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한 寄附金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稅法에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둘째, 寄附金 損金算入限度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所得金額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소득금액 이외에도 資本 등의 金額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所得金額 이외에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은 所得에서 지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관점에서 法人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한 損金算入限度額의 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資本이나 自己資本의 규모가 큰 企業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수 있으므로 資本이나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損金算入限度額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寄附金を 지출하는 企業에 대한 法人稅制의 차이점 이외에도 寄附金を 지출하는 個人에 대한 所得稅制의 차이점이 企業의 寄附行爲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日本의 경우 1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總課稅所得의 25%까지 공제되고, 美國의 경우 公共慈善團體에 대한 기부금은 課稅所得의 50%까지 그리고 民間團體에 대한 기부금은 課

본과과학기술정보센터, 일본사학진흥재단, 일본육영회,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일본에술문화진흥회,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연구진흥기금, 심신장애자복지협회, 일본적십자사,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및 해상재해방지센터 등이 이에 속한다.

稅所得의 30%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적은 편이다. 全額損金算入寄附金の 경우 전액 공제되기는 하지만 근로 소득에만 해당되며 指定寄附金の 경우 근로소득의 5%까지만 공제된다. 이에 따라 부와 소득의 귀착자인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宗教團體를 제외한 대부분의 團體에 대한 寄附金은 주로 기업 차원에서 지출되고 있다.

〈表 6-3〉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의 國際比較

	寄附金の種類	控 除 限 度	
		法人稅	所得稅
韓國	전액손금산입 기부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전액손금산입기부금+지정기부금(실제 기부액과 근로소득금액의 5% 중에서 적은 금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전액손금산입기부금) × 7% + 자기자본(50억원 한도) × 2%	
	비지정기부금	손금으로 인정 안됨	손금으로 인정 안됨
日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 합계액 - 1만엔 (총소득의 25% 상당액 한도)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자본 등의 금액 × 0.25% + 소득금액 × 2.5%) / 2	
	일반기부금	(자본 등의 금액 × 0.25% + 소득금액 × 2.5%) / 2	손금으로 인정 안됨
美國	자선기부금	과세소득 × 10%	공공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 과세소득의 50%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 : 과세소득의 30%

Ⅶ. 寄附金 關聯 租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寄附金 範圍의 調整

가. 問題點

寄附金의 範圍와 관련된 問題點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稅法에서 사용되는 公益의 概念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며, 다른 하나는 法人稅法上 寄附金의 損金認定 團體와 相續稅法上 公益法人의 範圍가 일치하지 않아 納稅者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寄附金은 현행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全額損金算入寄附金,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指定寄附金, 그리고 기부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非指定寄附金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寄附金을 구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公益이라는 개념이다. 즉, 公益性이 매우 강한 寄附金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公益性이 매우 약한 寄附金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寄附金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공익이란 社會一般의 利益, 다시 말하면 不特定多數의 利益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稅法에서 包括적으로 定義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寄附金 區分의 기준이 되는 公益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손금인정을 받는 寄附金의 範圍만을 열거하고 있다. 세법에 公益의 概念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정책당국은 社會環境의 變化와 함께 계속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금을 세법상의 寄附金 範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매년 稅法을 개정하여 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그 종류에 따라 損金認定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稅法에 공익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損金認定을 받는 寄附金과 損金認定을 받지 못하는 寄附金의 구분이 모호하며, 또한 全額損金算入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의 구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기부금의 모금주체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이면 그 기부금은 무조건 全額損金算入寄附金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그 寄附金이 행사비로 쓰이는 경우에도 指定寄附金이 아닌 全額損金算入寄附金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損金算入限度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問題點이 있다.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指定寄附金은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산정한 범위액과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산정한 범위액을 합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法人稅法上 寄附金의 損金認定 團體와 相續稅法上 公益法人의 範圍가 일치하지 않아 納稅者에게 혼란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 稅法이 필요에 따라 公益性이 있는 法人의 範圍를 독자적으로 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법인의 범위가 서로 달라졌으며, 公益性이 있는 法人에 관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한 稅法體系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나. 改善方向

全額損金算入寄附金, 指定寄附金, 그리고 非指定寄附金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公益이라는 概念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공익의 내용은 經濟·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公益에 대한 客觀的인 基準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美國의 경우 公共安全 測定과 어린이·동물에 대한 학대방지사업이 公益事業에 포함되어 있으며, 日本의 경우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經濟協力事業, 야생동식물의 보호·번식에 관한 사업 등이 公益事業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公益事業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經濟·社會가 더 발전하게 되면 公益事業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稅法에 공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寄附金이 공익성을 띠는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稅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책당국의 恣意性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稅法에 공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寄附金의 範圍를 현행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全額損金算入寄附金制度를 폐지하고 이를 指定寄附金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일정 한도 내에서 損金認定을 받는 寄附金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은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에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이를 全額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寄附行爲가 第IV章의 분석 결과와 같이 經營者의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寄附金을 경상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全額 損金算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企業의 純利益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결국 株主의 財產權을 경영자가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法人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指定寄附金을 받을 수 있는 團體와 相續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公益法人에 해당하는 團體는 모두 공익성이 강한 단체로서 그 범위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法人稅法上 指定寄附金의 損金認定 團體와 相續稅法上 公益法人 양쪽 모두를 포함하여 公益法人의 範圍를 정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課稅對象으로 전환되는 法人 혹은 團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現行 法人稅法上 指定寄附金을 받을 수 있는 團體와 相續稅法上의 公益法人 모두를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社會環境의 變化로 인해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진 단체는 제외하고 그 대신 公益性이 두드러진 團體를 새로 포함시키는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國稅基本法에 열거하고 그것을 다른 稅法에 서도 準用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損金算入限度額 算定方法의 調整

가. 問題點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은 원칙적으로 全額 損金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기부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에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損金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의 경우 損金算入限度額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반면 指定寄附金은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範圍額과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範圍額의 합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즉, 指定寄附金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은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所得金額 및 自己資本 각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所得金額 基準 範圍額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全額損金算入寄附金과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缺損金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또는 課稅標準의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리고 自己資本 基

準 範圍額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自己資本(50억원을 한도로 함)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損金算入限度額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는 크게 두 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損金算入의 限度額을 산정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 指定寄附金의 경우 所得金額 이외에도 自己資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自己資本은 5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自己資本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損金算入限度額의 최대금액은 1억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自己資本의 規模가 50억원 이상이면 純損失을 보는 기업의 경우도 1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純利益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寄附金을 지출하는 것은 기업의 繼續性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損金算入의 限度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問題點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중 한 측면은 본 보고서 第Ⅳ章의 實證分析 結果에 따른 것이다. 第Ⅳ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증분석 결과는 利潤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기각한 반면, 效用極大化 模型의 假說을 지지하였다. 기업의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을 一般經費로 인정하여 損金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기부행위가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을 經常的인 支出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자가 재량으로 寄附金을 지출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純利益 감소로 연결되며, 이는 株主의 財產權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은 全額損金算入寄附金과 관련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의 경우 그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에서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순이익 전부를 全額損金算

入寄附金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企業의 利潤은 일반적으로 그 일부가 株主에게 配當되고 나머지는 企業內部에 留保되는 것인데, 이를 기부금으로 전액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純利益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株主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기업의 繼續性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改善方向

損金算入限度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체적으로 損金算入限度額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부행위가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을 經常的인 支出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損金算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損金算入限度額을 축소하는 방법으로는 自己資本 基準 範圍額을 폐지하고 그 대신 所得金額 基準 範圍額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는 日本의 制度와 유사한 것이고, 改善方案은 현재 美國이 채택하고 있는 制度와 유사하다. 기부금은 소득에서 지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관점에서 法人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한 損金算入限度額의 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純利益을 내지 못하는 企業의 경우는 가능하면 寄附金을 지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株主의 財產權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企業의 財務狀態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일 손금산입한도액을 대폭 축소하고자 한다면 所得金額 基準 範圍額조차도 축소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全額損金算入寄附金制度는 앞 절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폐지하지 않는다면 損金算入限度額만이라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美國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만을 損金算入限度額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금액의 100%까지를 損金算入限度額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어떤 기업이 소득금액

의 100%를 전부 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이와 같은 寄附金 支出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대부분의 주주들, 특히 少額株主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고 있는 損金算入限度額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株主의 財產權을 보호하고 아울러 기업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寄附金 募集方法의 改善

가. 問題點

현행 寄附金品募集規制法에서는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寄附金品의 募集節次 및 使用方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同法 第2條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寄附金品의 募集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定款이나 規約 또는 會則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加入金·一時金·會費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각출하는 金品
- ② 사찰·교회·향교·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信徒로부터 각출하는 金品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所屬員 또는 第3者에게 寄附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金品
- ④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學校의 設立 또는 維持 등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출하는 金品

寄附金品募集規制法 第3條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寄附金品을 募集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救濟事業
- ②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救恤事業
- ③ 불우이웃돕기 등 慈善事業
- ④ 公益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寄附金品 募集의 필요성이 인정된 事業

그러나 이상과 같은 법률상의 기부금품모집규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公共機關이나 각종 團體가 직접·간접으로 의뢰, 권유 등의 방법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1994)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기부금과 재향군인회, 대한결핵협회, 갱생보호회 등 社會團體에 대한 기부금은 자발적인 동기보다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지출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특히 최근에 와서는 地方自治團體들이 지방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²⁾. 또한 이외에도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³⁾이 제정됨으로써 당초 기부금품모집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公共機關이나 각종 團體의 자의적인 모금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1) 반면 학술·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기술진흥단체 등 公益團體에 대한 寄附金의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지급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韓國經濟新聞』, 1997. 2. 28.

3)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은 ①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② 결핵豫防法, ③ 報勳基金法, ④ 文化藝術振興法, ⑤ 韓國國際交流財團法 등이다.

나. 改善方向

寄附金이 국가방위·사회복지·학술·문화·종교 등의 公益的 目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企業利益의 社會還元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기부금의 모집과정을 보면 強制性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純利益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寄附金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企業의 經營成果가 나빠지는 것이므로 公權力이 직접·간접으로 개입되어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強制로 募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企業의 寄附金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寄附金의 募集方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부금의 모집과정에서 強制性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公共性을 가지고 있는 기부금은 租稅로 전환하고 寄附金募集規制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기부행위는 순수하게 기업의 自發的인 意思에 따라 행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寄附行爲는 가능하면 企業이 아닌 個人 次元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의 寄附金에 대한 損金算入限度를 축소하여 기업의 기부행위를 억제하는 동시에, 個人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所得控除限度를 대폭 尙尙조정해 줌으로써 寄附行爲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우 全額損金算入寄附金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에만 해당되며 指定寄附金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5%까지만 공제된다. 이에 따라 부와 소득의 귀착자인 個人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團體에 대한 寄附金은 주로 企業 次元에서 지출되고 있

다. 그러나 여러번 언급했다시피 기업의 利潤은 주주에게 배당되고 株主가 개인 입장에서 寄附行爲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所得控除限度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勤勞所得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利子所得과 配當所得 등을 포함한 綜合所得에 대해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II. 要約 및 結論

本 報告書에서는 먼저 上場法人, 登錄法人 및 外監法人에 한하여 기부 금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分析對象 企業 중에서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年平均 72.7%에 달하였으며, 이 비율은 上場法人이 年平均 95%를 기록하여 年平均 70.3%에 그친 非上場法人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業體當 平均 寄附金은 1990년에 가장 낮은 8천만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후 점점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 4,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業體當 寄附金支出 規模는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에 비해 대체로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寄附金의 規模는 1987년 3,457억원에서 1995년 1조 5,547억원으로 35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分析對象 企業의 數가 3,172개에서 6,384개로 101%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寄附金 規模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297% 증가한 賣出額에 비해서는 增加幅이 조금 큰 것이었으며, 390% 증가한 純利益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조금 작은 것이었다.

賣出額 대비 寄附金의 비율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年平均 0.27%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비율은 上場法人의 경우 年平均 0.26%, 非上場法人의 경우 年平均 0.2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純利益에 대비한 寄附金의 비율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年平均 1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 비율은 非上場法人이 年平均 19.5%로 上場法人의 14.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寄附金を 일단 準租稅로 간주하고 租稅負擔의 衡平性 研究에서 흔히 행해지는 방법을 이용하여 法人所得 階層別 寄附金負擔 分布, 資本金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 그리고 賣出額 區間別 寄附金負擔 分布를

분석하였다. 순이익, 자본금, 매출액의 구간을 각각 10분위로 나누어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이 높은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寄附金負擔率이 증가하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累進的 構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정한 패턴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純利益, 資本金, 賣出額의 規模가 큰 분위로 갈수록 寄附金을 지출하는 기업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寄附行爲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純利益이나 資本金 또는 賣出額 規模가 큰 분위로 갈수록 寄附金 規模의 증가율이 순이익이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本 報告書에서는 Navarro(1988)의 研究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가 利潤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를 實證分析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과 세율간에 正의 相關關係가 있으며, 推定係數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이 經營者의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寄附行爲를 한다는 假說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로부터 기부금을 經常的인 支出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損金算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영자가 재량으로 寄附金을 지출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純利益 減少로 연결되며, 이는 株主의 財產權을 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本 報告書에서는 이상과 같은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寄附金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主要 外國의 租稅制度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寄附金의 範圍에 관련된 問題點과 改善方向이다. 첫째, 全額損金算入寄附金, 指定寄附金, 그리고 非指定寄附金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公益이라는 概念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公益의 내용은 經濟·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變化할 수밖에 없으므로 公益에 대한 客觀的인 基準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만일 稅法

에 공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政策當局의 恣意性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稅法에 공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결국 寄附金의 範圍를 現행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全額損金算入寄附金制度를 폐지하고 이를 指定寄附金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일정 한도 내에서 損金認定을 받는 寄附金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의 기부행위가 經營者의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寄附金을 경상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全額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法人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指定寄附金을 받을 수 있는 團體와 相續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公益法人에 해당하는 團體는 모두 공익성이 강한 단체이므로 그 범위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法人稅法上 指定寄附金의 損金認定 團體와 相續稅法上 公益法人을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現행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상속세법상 공익법인 모두를 公益法人의 範圍에 포함시키되,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公益性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진 團體는 제외하고 그 대신 公益性이 두드러진 團體를 새로 포함시키는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國稅基本法에 열거하고 다른 稅法에서도 이를 準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損金算入限度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問題點과 改善方向이다. 첫째, 전체적으로 損金算入의 限度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기부행위가 效用極大化의 動機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을 經常的인 支出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損金算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손금산입한도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는 自己資本 基準 範圍額을 폐지하고 그 대신 所得金額 基準 範圍額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에서 지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점에서 法人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한 損金算入限度額의 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純利益을 내지 못하는 企業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寄附金을 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株主의 財產權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企業의 財務狀態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일 손금산입한도액을 대폭 축소하고자 한다면 所得金額 基準 範圍額조차도 축소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全額損金算入寄附金制度는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폐지하지 않는다면 損金算入限度額이라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이 소득금액의 100%를 전부 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이와 같은 寄附金 支出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대부분의 주주들, 특히 少額株主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財產權을 침해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현재 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는 損金算入限度額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株主의 財產權을 보호하고 기업이 繼續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寄附金 募集方法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向이다.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寄附金의 募集方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부금의 모집과정에서 強制性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부금은 租稅로 전환하고 寄附金品募集規制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기부행위는 순수하게 기업의 自發的인 意思에 따라 행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寄附行爲는 가능하면 企業이 아닌 個人 次元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利潤은 주주에게 배당되고 株主가 개인 입장에서 寄附行爲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所得控除限度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勤勞所得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利子所得과 配當所得 등을 포함한 綜合所得에 대해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珍洙, 『公益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改善方向』, 政策報告書 96-10, 韓國租稅研究院, 1996.
- , 「企業 寄附行爲의 動機에 관한 研究」, 『財政金融研究』, 제4권 제1호, 韓國租稅研究院, 1997. 8.
- 李秉九, 『寄附金에 대한 實務解說』, 韓國稅政新聞社, 1994.
- 李春權, 『企業의 準租稅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91.
- 趙達英, 『法人稅法精解』, 租稅通覽社, 1991.
- 租稅通覽社, 『'96 租稅便覽』, 1996.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의 準租稅負擔 實態分析』, 1994.
- 貝塚啓明・金本良嗣(編), 『日本の 財政システム』, 東京大學出版社, 1994.
- 渡邊淑夫, 『法人稅法』, 中央經濟社, 1994.
- Bennett, James T. and Manuel H. Johnson, “Corporate Contributions: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Public Choice*, Vol. 35, 1980.
- Belsley, D.A., E. Kuh and R.E. Welsch, *Regression Diagnos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80.
- Clotfelter, Charles T., *Federal Tax Policy and Charitable Giv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 “The Impact of Tax Reform on Charitable Giving: A 1989 Perspective,” J. Slemrod(ed.), *Do Taxes Matter?*, Cambridge: MIT Press, 1990.
- Clotfelter, Charles T. and C. Eugene Steuerle, “Charitable

- Contributions,” Henry J. Aaron and Joseph A. Pechman (eds.),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Washington D.C. : Brooking Institution, 1981.
- Commerce Clearing House, *Internal Revenue Code*, 1995.
- , *1996 U.S. Master Tax Guide*, 1996.
- Feldstein, Martin,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 Expenditure: The Case of Charitable Giving,” Henry J. Aaron and M. J. Boskin(eds.), *The Economics of Taxation*, 1980.
- Feldstein, Martin and Charles Clotfelter,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 1976.
- Glenday, Graham, Anil K. Gupta and Henry Pawlak, “Tax Incentives for Personal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8, 1986.
- Hochman, Harold M. and James D. Rodgers, “The Optimal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Vol. 30, 1977.
- Jensen, Michael C. and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Accounting*, Vol. 3, 1976.
- Johnson, Orace, “Corporate Philanthropy: An Analysis of Corporate Contributions,” *Journal of Business*, Vol. 39, 1966.
- Keim, Gerald D., Roger E. Meiners and Louis W. Frey, “On the Evaluation of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Vol. 35, 1980.
- Levy, Ferdinand K. and Gloria M. Shatto, “The Evaluation of

-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Vol. 33, 1978.
- , “The Evaluation of Corporate Contributions: A Reply,” *Public Choice*, Vol. 35, 1980.
- McElroy, Katherine M. and John J. Siegfried, “The Effect of Firm Size and Mergers on Corporate Philanthropy,” Betty Bock, Harvey J. Goldschmidt, Ira M. Millstein and F. M. Scherer(eds.), *The Impact of the Modern Corpor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Navarro, Peter, “Why Do Corporations Give to Charity?,” *Journal of Business*, Vol. 61, 1988.
- Schwartz, R. A., “Corpor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Finance*, Vol. 23, 1968.
- , “Reply,” *Journal of Finance*, Vol. 25, 1970.
- Webb, Natalie J., “Corporate Profits and Social Responsibility: Subsidization of Corporate Income under Charitable Giving Tax Law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48, 1996.
- Williamson, Oliver E., “Managerial Discretion and Business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1963.
- , *The Economics of Discretionary Behavior: Managerial Objectives in a Theory of the Firm*, N.J.: Prentice-Hall, 1964.

附 錄

〈附表 1〉 公益法人의 範圍

公 益 法 人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更生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0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1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12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13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14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5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6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附表 1〉의 계속

公 益 法 人	
18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9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 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2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2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2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25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27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附表 2〉 特定公益増進法人
(日本の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 第40條 法人)

特定公益増進法人	
1	자동차안전운전센터
2	종합연구개발기구
3	이화학연구소
4	신기술사업단
5	일본원자력연구소
6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7	우주개발사업단
8	해양과학기술센터
9	환경사업단
10	국제교류기금
11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
12	방송대학학원
13	일본학술진흥회
14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15	일본사학진흥재단
16	일본육영회
17	일본 체육·학교건강센터
18	일본예술문화진흥회
19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연구진흥기금
20	심신장애자복지협회
21	일본적십자사
22	기본기술연구촉진센터
23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24	해상재해방지센터
25	국제관광진흥회 및 통신·방송기구

企業의 寄附行爲와 租稅政策方向

金 珍 洙

本 報告書에서는 Navarro(1988)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寄附行爲가 企業의 利潤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지, 經營者의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지는지를 實證分析하였다. 우리나라의 資料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寄附金函數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인 稅率의 推定係數는 正의 값을 가졌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理論的 模型으로부터 企業의 寄附行爲가 經營者의 效用極大化 動機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本 報告書는 實證分析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기부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주요 외국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全額損金算入寄附金制度를 폐지하고 이를 指定寄附金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寄附金에 대한 損金算入限度額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 기준 범위액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금액 기준 범위액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寄附行爲는 기업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해서는 寄附金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公權力이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강제로 寄附金을 모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bstract>

Corporate Contributions and Tax Policy in Korea

Kim, Jin So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motives of Korean corporate contributions within the context of profit maximization and utility maximization, applying the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Navarro (1988). Using data from the period of 1988 to 1996,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tax rate in the contribution equation is positive and high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The evidence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proposition that utility maximization rather than profit maximization is an important motive deriving corporate contributions in Korea.

This finding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ax policy. First, the current fully-deductible and partially-deductible classification of corporate contributions for tax purpose should be streamlined to a single type partially-deductible contributions system. Second, the cap on the deduction also needs to be reduced. For that purpose, it is recommended to determine the cap based only on income rather than income and capital. Third, contributions should be encouraged at personal level rather than firm level. To promote personal contributions, the amount of tax deduction allowed for personal contributions should be raised considerably. Finally, it is not desirable to use political influence to force contributions.